

人權、自由 그리고 拷問

人權의 최대의 敵인 拷問은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익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영구히 말살되어야 할 것이다.

車 鋪 碩
(滄陽大法政大教授 · 刑法學)

拷問의 歷史

인류의 역사는 洋의 동시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고분의 역사로 일컫지 있다. 고대왕국에서는 물론 중세 서구의 봉건국가에 있어서도 고분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러한 고분제도는 근세 초기 집제군주국가의 국가정대주의가상에 부합하여 「자배론중기의 왕」(Contasio prima productio)이라고 이름이 붙여 정도로 자배의 증기가 치기 정대시되었다. 자배를 얻기 위한 고분은 비처으로도 허용되었음이 이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은 극심하였다. 특히 정처법이나 이교도에 대하여는 혹독한 고분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한 인명의 상실은 불가피한 현상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근세 초기의 계몽주의사상이 「불

테르」가 「대류의 형사제도」는 인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영국의 형사제도는 인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듯이 18세기 서구의 형사제도 특히 고분제도가 일나 인권을 유린하고 잔혹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功利主義적 인간관에 의하면 죄인의 자배은 그 진실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은 국가에 대하여 죄실을 진술할 의무, 즉 자배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죄실을 추궁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고분제도는 합리주의를 사상지 배경으로 하는 근세 초기의 고분제도는 죄인의 진실의부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제도는 18세기에 네두된 자유민주사상에 의한 준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침내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산물인 인권선언에 의해서 고분의 금지가 선언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분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삼국시대의 고분제도에 관해서는 고증보원이 없어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중앙집권적 왕권국가적 성격에 비추어 고분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추단할 수 있다.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禮問主義적 형사제도인 唐의 형사제도를 모방한 관개로 죄인의 자배를 얻기 위한 고분이 공인되었으며, 공민왕이 고문을 행하는 자는 이가대에 中問하여 처리하도록 임명된 내린 사실로 미루어 고려시대에도 일마나 혹독한 고분이 극심하였는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분제도는 朝鮮왕조에 이르러 형사제도로 확립되었다. 조선왕조의 기본법적인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이러한 법전에 의하여 인용되는 중국의 「大明律」은 죄인 고분에 관하여 고문을 허용하는 한편 고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비쳐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고분의 도구인 訊杖의 규정에 관하여는 진이가 3치 3촌(상축 1치 3촌 하축 2치) 원경은 7분, 넓이는 8분(惟同의 경우는 9분) 두께는 1.5(1.5寸)의 경우는 4분, 3(3寸)의 경우는 3분)으로, 고문을 가하는 부위를 분기와 넓적다리, 고분의 회수를 1차에 30회로 제한을 가하였다. 고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심문적 처벌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고분의 대상에 대해서도 비쳐 규제를 가하여 입심부나 산후 배일 이내의 산모, 80세 이상 10세 이하의 노유자에 대해서는 고분을 금지하였다.

국외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사용되었다. 관청은 그 규정에 따라 刑棍 대관 中은 소문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전도법인에 대한 관장을 治獄棍이라고 불렀으며 그 규정은 키가 5치 7촌, 폭이 5촌 3치, 두께가 1촌이며 배리는 부위는 분기로 재

하하였다.

刑訴法の 역사는 고문의 역사

그러나 형사절차의 실제에 있어서 고분에 대한 이러한 범죄제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불법적 고분이 자행되었음은 역사적 문헌에 의해서 명백하다. 즉 ① 죄인의 두 무릎뼈위에 부기를 두면 울러놓고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壓膝刑 ② 죄인을 기꾸로 매달고 발을 매리는 足杖刑 ③ 불로 살을 지지는 烙刑 또 ④ 烙刑 ⑤ 烙刑의 동을 치는 笞杖刑 ⑥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다리 사이에 2개의 朱杖을 끼워 가의한 비리듯이 좌우로 벌리는 즉 주리를 뜨는 剪刀周掌之刑 ⑦ 어리서림이 죄인용 마구 매리는 籠杖刑 ⑧ 동근 몽둥이로 죄인을 치는 圓杖刑 ⑨ 붉은 새칠을 한 동근 몽둥이로 이리서림이 마구치는 朱杖 籠問刑 등은 조선왕조시대 행하여졌던 대표적인 불법고문의 유형이다. 불법적 고문의 결과인 자배이 당피의 증거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혹독한 고분으로 인하여 인명의 상실 이 빈번하므로 조선왕조의 역대왕들은 누차 불법고문을 금지하는 교지를 내었으나 고분의 남용현상은 이진하였다고 한다.

조선왕조 말기인 1905년 「형법대전」에 이르러서도 고분의 도구인 訊杖에서 채찍(뿔기)을 치는 자은 笞)과 革鞭(줄아리)을 치는 자은 杖)으로 바뀌었을 뿐 고분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고분제도는 현실합방 적적인 1907년의 「訊問刑에 관한件」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이제 처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법령은 고분을 금지하고는 있었으나 사실상 혹독한 고분이 자행되었다. 왜경의 잔학한 고문에 의하여 육중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의 독립투사 애국지사

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은 이를 실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비인도기 고문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서 불구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지 잃었는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고문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문이 성행하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식민지적 통치 수법이 있다는 사실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고문에 의한 자백이 법률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실제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자백을 인지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륙법 계통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다.

프랑스 혁명 후 이들 국가에서는 자백의 절대적 증거 가치를 부정하고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는 하였으나 자백을 다른 증거와 병용하게 취급하였다. 자백의 신빙성(증거가치)을 법관의 자유심중에 일정한 결과 심사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함지라도 법관이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때문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고인의 비판에 대한 간접한 호소는 죄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한낱 방법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실례는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형사재판사에서 뿐만 아니라 나찌하의 독일 형사재판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종주국인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고문이 채택되었고 그러한 고문에 의해서 얻은 자백이 유죄판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륙법적 형사소송법이 커다란 맹점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허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

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유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서 일본형사소송법 제319조 1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특히 나찌하의 쓰러린 체면을 바탕으로 서독이 1950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고문에 의한 자백은 물론 진술의 자유를 침해한 일체의 자백(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자백의 역사이며 자백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刑罰法 발전사는 강제자백 및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拷問의 素地

우리 헌법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제11조 2항) 형법은 고문을 법적으로 규정하여(제125조) 고문을 자행한 수사 공무원 등에 대하여 형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제309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은 공무원법상의 정계사유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사유로 된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관한 기사가 종종 신문의 사회면용 장

면원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법원을 검거하고 비위를 단속하는 당국에 의해서 고문이라는 「비리」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문의 소지가 있지 않음까 생각한다.

첫째로 수사관리의 자백민중적 수사관용을 들 수 있다. 수사신상에 미오른 용의자 또는 피의자를 우선 인형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태도는 자이하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공무원과 비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와의 충돌현상을 빚게 되며, 여기에서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고문이라는 무리가 뒤따라기 마련이다.

다음 용의자나 피의자로 인정하기 전에 비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 예를 들면 비행에 사용된 용기, 범죄의 산물인 장물, 범죄현장의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이러한 물증 인출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면서 비행을 추궁한다면 구태여 고문할 필요없이 자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 충분한 물증서 증인 등이 확보된다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절감해도 될 것이다. 「先자백 後방증」이라는 자백민중적 수사관이나말로 고문의 산모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른바 무방식 수사 신중수사는 수사의 실체에 있어 고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로 자백의 증거가치를 들 수 있다. 범죄의 지능화, 조직화로 인해서 재판적 증거의 수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현장에 지문을 남긴다는 것은 이미 접근대죄 「密室범죄」에 있어서는 자백 이외의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살인범이나 약간전도범의 경우도 비행현장에서 법원을 증거하지 않는 한 범인의 동인성 즉 범인과 범죄의 인접성을 입증하는 것은 자백에 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감첩 밑수 마약 소매치기와 같은 계보적 조직범죄에 있어서도 자백에 의하지 않고는 범죄의 조직방을 파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백의 획득은 범죄수사에 있어 제1키 저 기본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백의 획득 여하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백을 획득하게 되면 이에 따라 방증수지도 용이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백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기에 자백강요를 목적으로 한 고문의 소지가 있다.

拷問의 證據價値

세계로 고문의 입증관심용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擧證責任(실정적 기준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에 대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고문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문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서 충분하므로(판례의 태도) 그 입증의 용이하며 검사에 의해서 고문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의 부담(형사적 기준책임)은 피고인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피고인측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피의자신분은 비공개로 행하여지며 고문은 그야말로 밀실범죄이므로 고문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고문을 입증할 재판적 증거는 있을 수 없다.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검사의 신분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공백성

에서의 주장이 단순히 공판정에서 비법적인 수단인 경우가 허다하였다는 점에 비하여 피고인의 주장만 으로 결과적으로 고문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문의 의한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있다는 즉 증거의 사용가능성을 의미한다. 김창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사행된 중요한 소지의 하나라 할 것이다.

내제로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1920년, 「실버논 사건」(Silverthorne Lumber Co. v. U.S. 231, U.S. 383)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효시로 1936년 「나논 판결」(Nadone v. U.S. 308, U.S. 338) 1969년 「왕산 판결」(Kong Sun v. U.S. 471) 1969년의 「존슨 판결」(People v. Johnson) 등에 의해서 이른바 「푸나무 과실의 원칙」(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이 확립되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증거배제법칙에 의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고문하여 살인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고 그 자백의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매정한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 자백은 물론 사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실무에서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압수가 고문에 의한 자백의 결과이거나 여부를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백에 의거하여 획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자백의 획득을 무죄으로 고문이 가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라도 자기목적 이고 존립의 정당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는 것이 그 존립의 정당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의 실현도 어떤 행위가 개인의 생활이 의 및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건을 충족하거나 위태롭게 한 때에 한하여 필요악으로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서 형법권이 실현되게 된 것은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과 그 뒤 이 일어난 시민혁명들이 계기가 되었다.

개몽주의 운동은 오늘날의 형사법제도를 창조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은 자연과학의 융성과 함께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관을 내세워 구시대의 인륜유린의 악법에 대한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그들의 무기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 호소하며 발전한 자연법, 자연적 평등, 자연법, 그리고 사회계약설 등이었다.

인간의 인간다운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여 이것을 초국가적 인권이라 칭함으로써 인정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 권리의 보장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당시 형사법의 특징은 자의성, 간섭성, 신분성 및 가혹성으로 표현되는데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은 이것들을 철폐함으로써 형사법의 문화적 인도적인 기능을 하리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그 뒤에도 몇 번에 걸친 반동의 물결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2차 대전후의 세계인권선언 및 각국의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임무를 띤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헌법헌법도 인권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선언하였다. 또 제법 절차의 보장, 무죄추정의 비리, 고문의 금지, 묵비권의 보장,

법인의 처벌이라는 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의 진실성 즉 증명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대륙법계의 저권주의적 소송관이기도 하다. 법리의 정압, 법인의 처벌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망되므로 법인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저권주의적 소송관은 일용 할리성이 있다고 여기진다.

그러나 고문의 금지는 기본적 인권인 보장을 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청이며 형사절차의 대원칙이다. 고문은 헌법위법적 사항에 시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고문을 질 대적으로 금지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한편으로 그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선언하는 헌법의 정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제 309조를 유명무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형사소송법 학자들이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영미법에 있어서의 법정절차의 法理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해석, 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저도 원리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人權保障의 原理

국가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의 생활이익과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배경적 조건 즉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제제도

신체구속에 대한 영장주의의 화될 기타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제도, 구속지부심사제도, 병문인의 퇴권, 형사보상청구권, 프라 이비시의 보호 등을 비롯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성질은 제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 보장신입에 도 불구하고 헌법적차별제도의 마찰과 헌법위의 여러가지의 미비점 때문에 그 집행상의 분별이 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拷問과 人權

刑事司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의 형사절차에서 고문은 인권의 최대의 적이며 형사소송의 독소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형사재판의 실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민주성의 汚穢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문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최선의 양약은 수사의 과학화라고 생각된다. 수사의 과학화란 수사장비의 과학화, 수사조직의 효율화, 수사기술의 현대화를 말한다. 수사의 과학화에 의해서만 자백위증의 수사는 지양 될 것이며 자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도 이 땅에서 지워 질 단계에 될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 과학화는 내이론으로 해 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절에서 기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은 수사관리들의 민주적 자질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수사관의 화립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26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 2). 유

피의 죄의 인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게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범위에 이극난다.

『죄는 미우하되 죄인은 미우하지 말라』는 것은 형사절차에 관한 한 금언이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지는 한이 있다』라고 한사람의 유명한 사담을 치명해서는 안된다. Beatrice ten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라는 비인은 결코 영미법에만 타당한 사법정신이 아니다. 수사관계공무원이나 재판관계공무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신문과 조사를 할 때 고문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할 것이다. 비주적 수사관에 의해서 민주적 수사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대제는 법률상의 방책이 아니고 사실상의 이상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고문에 대한 구제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소송법상의 구제, 고문을 자행한 수사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형사제제, 또는 정계처분에 의한 제제, 고문을 가한 수사공무원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제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은 고문에 의한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소송법적 구제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고문과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흥미있는 민화를 보여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은 수사경찰등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조서이나 부인조서이나를 불문하고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고문과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조서)에 집중되고 있다.

인었다 할지라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서에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사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도 있다. 1981년 10월 13일에 선고한 대법원 81도 2160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임의성판결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배척을 오해하여 증거능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판결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은 1, 2심을 통하여 수사가 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공판정에서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을 강요당할바 없다고 하여도 결국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서의 자백이 과연 임의로 된 것인지도 조사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검사의 신문당시에 고문 등에 의한 자백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검사가 조사하기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

이른바 「德成女大」에 관한 강간 및 살인사건」에 관한 1972년 8월 22일의 대법원판결은 검사에 대한 자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의자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손목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경찰관의 심한 고문에 못이겨 취조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체계도에 따라서 비로소 자백하였다. 그후 바로 검찰청에 인행되어 취조경찰관의 진정에서 검사에게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자백조서)를 작성한 후 다시 경찰서로 인행되었다. 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날 검사에게 한 자백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취조경찰관 또는 인행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백의 任意性 논란

1977년 5월 24일의 대법원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위심은 관세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한 의일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 의한 고문의 위험 아래 자백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 의한 고문의 위험 아래 검사의 조서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조서의 임의성이 부인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임의성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상 2개의 대법원판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수사경찰이나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하였는 자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중대한 위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선 수사기관의 고문폭행 등에 의한 자백이 검사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판결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가 자백 등의 진술 또는 서류작성의 임의성에 관한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조사가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부계이다. 이제는 실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에 대한 자백의 임의성을 다룰 때에는 그 임의성 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범죄수사의 실무에 있어 1981년 10월 13일에서 고한 대법원판결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인권침해적 처사는 거의 사라지리라 기대할 만하다.

違法搜查活動의 抑制

법외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간에 범죄수사는 심신의 파상상태에 있는 가장 무리한 피의자와 강렬한 정부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법한 수사는 아무리 억제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류의사의 참혹한 악류의 장면을 연출하고 인권의 최대의 적인 고문이야말로 이로 말미암은 어미한 이익이 초

한길사는 '現代日本'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야심적인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思想新書 6

現代日本の解剖

韓培浩 · 崔相龍 · 朴玄採 · 宋建鎬 外

明治体制과 근대화/아시아의 파쇼체제의 興亡/일본의 전통과 정치적 근대화/現代日本政治論/일본의 財界와 보수정권/일본의 군사·외교전략/자본주의의 성립과 제국주의화과정/제법의 형성과 성격/日本·日本人·日本文化/일본인의 전통체질/日本武士道の 계보/일본인의 韓國觀... (크라운판 338면 · 3,200 원)

오늘의 思想新書 15

日本現代史의 構造

車基璧 · 朴忠錫 編

近代日本政治史의 전개/自由主義와 國家主義의 갈등/이데올로기로서의 天皇制/아시아觀의 형성과정 · 특징/明治維新論/明治國家의 사상/大正데모크라시의 전개와 논리/日本파시즘의 사상과 운동/戰後 정치·경제·사회的 방향/日本近·現代史 용어·연표·사건해설... (크라운판 438면 · 4,000 원)

오늘의 思想新書 27

國權論과 民權論

現代日本研究會 編

일본근대화과정의 명암/명치유신과 尊王思想/自由民權運動의 배경과 전개/大正期의 사회문제와 사회운동/일본의 대륙진출 정책과 滿蒙權益/국가주의와 국기개조운동/막아더軍政의 민주화정책/안보체제반대 국민운동의 형성과정/일본노동운동의 保守化/後期産業社會에서의 정치참여 : 住民運動/자유민권기의 興亞論과 脫亞論 (크라운판 354면 · 3,500 원)

오늘의 思想新書 53

自民黨의 長期執權 연구

現代日本研究會 編

일본의 自民黨은 어떻게 하여 2차대전 이후 오늘까지 계속 집권하면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역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원인을 분석, 현대일본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論著! (크라운판 354면 · 3,500 원)

마포구 아현동 618-21/전화 363-4297, 0661

한길사

래된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영구히 남... 이야 할 것이다. 위민수사의 이 제 방향은 당해 피의자를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보다는 정부의 廉潔性 및 문화적 수준을 보장하고 그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두므로 그 이 제의 정도와 강도가 적게 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민권운동의 정정기를 맞아 소위 「형사내 혁명시대」라고 할만큼 피의자의 권리보장이 확충되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범칙이 철저히 화려했다. 고문에 의하여 얻은 진술은,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가하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압상태에서 얻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행적인 절차들, 위배하여 얻어진 모든 진술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기관의 위법적이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는 어떠한 사소한 惡이라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를 문화적 존재로 인정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민수사의 방지책으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피의권의 실질적 보장도 한 방법이 된다. 1980년대의 미국의 판결은 어떠한 피의자에 대해서건 그의 요구에 따라서 유효한 변호인의 조력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활동은 위법의 여예에도 도우미 되는 것이다. 수사활동의 可視性을 높임으로써 수사의 密行性, 糾問性, 강제성 및 기만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차가 「압류의 계곡」으로 방치되고 있다. 결코 문명된 사회가 취할 윤리적 태도가 아니다. 언제나

는 변호권의 보장이 없는 피의자 진술은 일등 고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현행 구속지부심 제도는 그 예외가 많고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인권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보석제도도 수사단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형사절차의 낙후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해방직후의 미군정비령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신수속에 관해서는 그동안 「인신수속」의 역사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복지사회건설이 최대의 이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를 위한 핵심적 제도는 법적 복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의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위민수사의 억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제비절차의 이념에서 볼 때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는 임박상의 무법, 법률상의 불명, 법정행상의 불명 등이며 이를 제거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식구조상의 불명 내지 무법상태를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대근대정치 및 의회에 의한 강권정치 아래에서 형성된 법률회피, 관권의 독선, 권력의 불명에 대하여 지한 함을 모르는 애속근심, 권력·의무의식의 결여 등은 하루 마베 벗어나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악과 불명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정의사회를 구축한다는 각인한 국민의식의 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拷問과人權

민을 고문해야 하고 고문할 수밖에 없는 권력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하다. 고문이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金重培 (重培日報編輯委員)

「拷問에 관한 보고」들의 요약

현대에는 「超暴力의 시대」라고까지 말해진다. 하늘엔 초월적 파괴력을 지닌 핵우산의 위협이 도사린다. 땅 위엔 초시대적인拷問의 공포가 넘실댄다. 1973년 이래 공표되었던 엠네스티 국제위원회의 「고문에 관한 보고」들은 땅위의 공포를 실감있게 표현한다.

「拷問」은 내이판형이나 餓死의 공포를 잘 모른다. 그러나 동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제정하는 일이다. 그 「고문에 관한 보고」들을 간추려 보면, 오늘날의 사건을 의심케 하는 「원시적 풍습」의 빛가지 특징이 화연하게 드러난다.

이 고문기술의 국제교류마저 드문 일은 아니다. 장비의 수출입도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문의 비밀화는 다시 고문하는 자와 고문당하는 자의 외, 그 사실을 부인하는 제3의 인물들 등장시키게 된다. 지난날의 논쟁은 고문폐지와 고문합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펼쳐졌으나, 이젠 「폐기주장자와 기정발장이」의 논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보고들이 지적하는 두번째 특징은 고문이 형사적 소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統治의 수단으로도 동원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통치권력에 대한 반대의견을 침묵시키는 무기가 된다. 정통성, 바꾸어 말해서 民의 동의라는 기반이 약한 권력일수록 침묵을 부르는 「공포의 무기」를 애용하게 된다.

세번째 특징은 그 침묵의 과급효과로 나타난다. 보고들은 고문이 화산되는 현상 그 자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문을 규탄하는 여론의 약화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거나, 공공연히 수공세비리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拷問은人權의歷史에 대한 反逆

내빈제 특징은 이른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順應率쯤으로 옮겨질 만한 이윤에서 드러나는 「名分찾기」로 요약한다. 가령 권력은 그 나라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킨수룩 심문방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까지 주장하게 된다. 거기서 고문하는 자는 「윤은 가치」의 대리인으로 자부

拷問의 몇가지 특징

첫번째 특징은 고문의 비명화로 요약된다. 자백이 「증거의 王」이었던 시대에 고문은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고문은 공개적이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형벌로 인식되었다. 고대로마나 고대 중국에서도 고문은 합법이였다. 법률학자들의 압력에 굴복, 고문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제 1차 세계 대전의 「프러드리히」 2세도 국내 大逆罪에 대해 재판권을 합법성을 고집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문이 불법화되면서 비명화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었다. 고문의 비밀화는 필연적으로 고문의 기술화할 동반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심지어

하게 되며, 고문당하는 자는 전체를 증복는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다루어지는 敵對와 卑下의 논리가 자라난다. 더구나 「불안한 사회」는 그 불안을 퍼뜨린 죄를 고백할 「희생양」을 찾는다. 역시 속의 「마녀사냥」은 이제 소련의 숙청이나 정신병동 수용과 같은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다섯째 특징은 「단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마침내는 그 되풀이가 관행으로 굳어지 간다는 점이다. 엠네스티는 그 보기의 하나를 일체의 경우에서 찾는다. 처음엔 어떤 제약 속에서 행해지던 고문도 나중엔 무차별의 만행으로 번져간다.

고문의 풍조는 확과도 같이 사회의 구성마다에 스며든다. 결국 고문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을 타락시키며, 권력이 그 권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정의의 이념을 되색시키고 만다. 따라서 고문은 권력 쪽에 단기적인 이득을 안겨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보 다 큰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문은 피흘려 쌓아온 인권의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정당성을 찾을 길 없는 비인간화의 타락이며, 또한 누구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일 수 없다. 모두에게 불행의 쓴 잔을 안겨 줄 뿐이다. 「고문에 관한 보고」들이 담고 있는 특징을 간추려 보는 것도 그 당연한 결론을 거듭 확인하고 싶어서이다.

물론 엠네스티의 보고들은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두루 살핀 데서 온 결론이다. 특히 그 초점은 전체주의의 이득을 빚어 내지 못한 「인권의 후진국」에 모아진다. 그러나 지이두운 專制의 나라들과는 달리, 한 집 공포의 그림자도

없는 「인권의 실천국」을 열어야 할 우리도 고문의 폐해와 그 참담한 결과에 눈을 감아 버릴 수 없다.

人權은 모든 국가의 공통목표

우리 헌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의 前文이 말하는 「모든 국가가 도달해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의 인권」 개념과도 일치되는 문맥이다. 한마디로 인권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며 목표이다.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한다.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가로막는 것은 나라의 질일 수 없다.

人權의 發達史는 人身自由의 확대史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다음아닌 인권이다. 사실 인권의 항목들은 국가의 정책목표들을 두루 내포하고 있다. 비단 자유만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추구 등도 빠지지 않는다. 그 인권의 항목들을 제대로 총괄해가는 나라야말로 참된 「先進」을 자랑할 만하다.

인권의 총족에 이행하는 권력은 민의 저항을 맞게 된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천부이며 불가침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신체, 그의 건강, 그리고 그의 명예를 방해나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拷問은 不法이며 違憲

고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안전에 대한 불신의 침해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그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고문은 절대로 금지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黙秘權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良心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간추려 말한다면, 고문은 그 신체의 자유와 고문금지, 불리한 진술을 않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못박은 헌법에 정면 충돌한다. 한마디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違憲임이 명백하다.

때문에 형사법은 정당한 절차, 절차의 정의 불결함이 요구한다. 인신의 자유의 역사는 기의 절차적 보장의 추구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절차적 정의의 추구가 없었다면 민주사회가 갖는 여러 가치의 많은 부분들이 멸망해버렸을 지도 모른다고 말해지는 것도 다른 뜻에서 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목표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열수 없다. 물론 그 원리는 정치의 터전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사적 절차에서 보다 준엄하게 요구된다.

그 권리란 사유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저항을 통해서 획득된 인권의 이치를 반증하는 표현이며, 동시에 기본권의 권리로서 민의 저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또한 기본적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드러낸다. 그것은 자유와 안전의 주체인 人身에 관한 권리의 강조로도 임하지가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Freedom of person」 또는 「personal liberty」를 人身이나 신체의 자유로 번역한다. 그러나 「피슨」을 「Body」와 동일시 해도 무방한 것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英美法이 쌓아온 인신의 자유 개념은 생명과 신체 그리고 건강만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까지를 포괄한다. 더러는 재산권마저 인신위 자유속에 끼여넣는 현실도 보인다.

그렇다면 프랑스 인권선언이 열거한 권리는 두루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발달자가 인신의 자유 확대와 함께 열려 왔다는 사실의 증명도 부립다. 영국의 법학자 「다이스」는 심지어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백개의 헌법조문과도 맞먹는 값어치를 갖는다」고까지 말한다.

사실 감옥에 갇히면 교회에 가지 못한다. 통행의 자유도 막히게 된다. 기구이전도 마음대로는 안된다. 토론을 통한 인문자율을 누릴 길도 없다.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재산권을 향유할 수도 없다. 투표소에 갈이가지도 못한다.

인신의 자유는 우선 자유와 안전을 요구한다. 자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금은 물론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안전은 그의 생명, 그의 사지, 그의

미국 연방대법원판사 「척슨」은 1953년, 이른바 「사네시 사건」의 판결에서 그 절차적 정의의 소중함을 「과격할 정도」로 강조하는 명언을 남겼다.

「절차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교양이 없는 문외한이거나 잉터리 법률가들뿐이다. 절차의 공정과 조화는 자유가 갖는 불가침의 본질이다. 신체의 자유가 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진디이 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선택을 강요당한다면, 소비에트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미국의 실체법 아래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코민로」(Common Law)에 따라 성실히 적용되는 소비에트의 실체법 아래서 살아가기를 택할지도 모른다」

「毒樹」에 열리는 「毒實」의 비극

불법 부당한 절차는 흔히 「毒樹」로 비유된다. 그 옥나무에서 거둔 열매인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 「毒實」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형사법도 물론 절차의 정의 불결을 존중한다. 따라서 「증거의 양」으로 균형을 띤 자백은 이미 「증거의 평면」으로 진락한지 오래다. 고문 폭행 협박 등 불법으로 강요된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불법집금은 물론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유도된 의성 없는 자백도 동일하다.

그것은 「毒樹」의 절차에서 일련 「毒實」의 증거라는 논리의 귀결이기도 하지만 보다 부기운 뜻은 역시 인권의 용

호 속에 도사된다. 봉건국가와 민주국가를 이르는 정표는 국가권력의 재현상에서도 찾아진다. 봉건국가가 권력의 기의 부재함으로써 인식된다. 그 인식은 「海官」이나, 「無常實」이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지 열매만 기루면 그만이다. 臣民은 그 앞에서 굴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현대국가는 그 권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 제한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위한 불가결의 요건으로 인식된다. 국가권력의 의지가 반드시 국민의 의지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그 분배의 소산이다. 형사법은 그 원리를 당사자 대응주의로 표현한다. 검찰관이나 피고인을 동등한 소송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舉證책임도 검찰관에 계돌아가야 마땅하다. 유죄의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언제나 공소권자인 검찰관에게 지워진다고 보는 것이 밀리상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법은 고문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심지어 가중처벌의 규정도 갖는다. 디리는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현범의 명분까지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法制的 自由」는 전진의 수준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맑은 눈의 「통테스키의」가 2백몇십년 전에 내다보았던 것처럼, 현실의 「習俗的 自由」가 반드시 법적 자유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말한다.

「법제는 자유로우면서, 시민은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시민은 자유로우나 법제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찍이 5세기에 살았던 聖「아우구스티누스」는 고문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 이치구니 없는 비리를 이렇게 지적한다.

「만일 그가 징배한다면, 그는 확실하지 않은 죄목으로 가장 확실한 刑을 받는 셈이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명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문의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더욱 치참한 사실은 고문을 받은 끝에 절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선고를 자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심판관은 그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가를 끝내 알지 못한다」

선각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종은 오늘에도 진부하지 않은 말이다. 그는 고문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함께 진실의 불부명이 낳는 또 하나의 고뇌를 연민한다. 역시 진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고뇌는 덜어지고 사회에 축적되는 부정의는 줄어진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1천5백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진실에의 접근은 바라는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의 「속속저 자유」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뒤에 다시 거론할 생각이지만, 법제와 현실의 괴리라는 낮은 틀에서만 보더라도 그의 대조론은 우리의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 것 같다.

「他述書」를 「自述書」로 둔갑케 하는 拷問

이른바 칸노파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高淑鍾부인은 허리 휘어진 모습으로 교도소 문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高부인은 무죄로 풀려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레이트 호텔에서는 온 몸이 반가벗겨진 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읍니다. 나는 경찰서 지하실에서 현장중도에 행연습을 강요당했고, 밤새껏 연습을 하다보니 이미 전짜범인이 되어버린 듯한 상태였습니다. 하느님,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상이 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부인의 기도는 모든 민의 기도였다. 그러나 이듬해, 한일합성의 金根배이사는 고문 끝에 「致死」의 종장을 맞고 말았다. 그밖에도 金詩勳 鄭載巴씨 등 「살인범」과 「부죄인」의 두 극단을 와레했던 민의 이름들은 허다하게 기억된다.

더러는 「他述書」를 「自述書」로 둔갑케 하는 고문은 그렇게도 엄청난 결과를 빚는다. 죽음에 이르는 「私刑」을 감수하게 되며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自」眞罪의 비극에도 빠지게 된다. 고문은 한 사람의 인간이 고소인임과 동시에 피고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

술한 고문의 폭로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흔히 그림자에 가린 채 고뇌와 인민의 일복을 남긴다. 그 보기는 이미 활자로 인쇄된 민사의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일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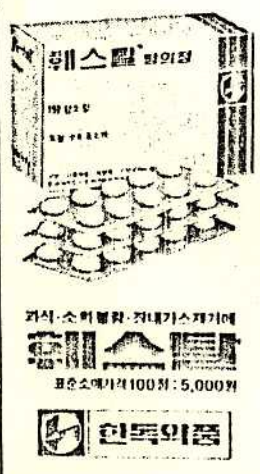
豫斷없는 진상의 조사틀

벌리 받을 내디딜 필요도 없다. 바로 「新東亞」의 1975년 4월호만 들춰 봐도 메아리를 남기지 못한 고문의 특보와 고발은 엄청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구속인사들의 고문사실 폭로」가 그 제목이다.

기사를 훑어보면 그 당시 시용대 물리대 국사학과 4년 생이었던 羅炳湜씨의 증언에 부딪힌다. 그는 고문의 陸戰·海戰·空戰論까지를 전개한다. 육전은 전신을 폭행하는 고문이며, 해전은 양동으로 몸을 끼이는 고문이다. 공전은 공중에 매달고 빙빙 돌리는 고문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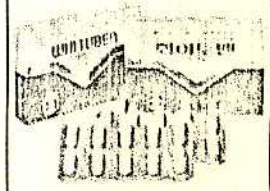
그는 이른바 「民衆學聯사건」에 관련된 이 온갖 육체적

웨스탈만 있으면 소화는 전지전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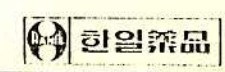
표준소독기 100개: 5,000원
신독의종

감기에 「화이트엔」 써보셨습니까?



- 목감기
- 몸살감기
- 기침감기
- 콧물감기

히안캅셀의 종합감기의
화이트엔
 표준소매가격 10각생 2,000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매마침 당시의 新民黨 의원 13명도 「고분정치 종식선언」을 내놓았다. 趙尹衡 洪英基 李鍾南 趙淵夏 金祿永 金敬仁 崔炯佑 李世圭 朴鍾律 姜根鎬 羅碩吳 柳甲鍾 金相賢 등 8명의 의원들은 그들이 귀었다는 고분의 내용을 소상히 고발한다. 그리고 「진국민을 독재의 옹타리로 몰아넣어 획일적인 북송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비인간적 반민주적인 치사가 공공연히 횡행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발혀지기 마련인拷問의 실상

당시의 신민당은 당내에 「고분정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朴正熙 대통령에게 이 놀랄고도 國恥의인 고분 정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계자의 임명은 물론 다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당인 共和黨의 원내총무 金龍泰의인

大韓辯協, 김근태씨 고문 告發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최근 고문과 용공 조작에 관한 물의가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진상의 규명과 극복을 위한 在野의 모인도 빈번히 되고 있다. 마침내 비류가들의 모인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의장 金權泰씨에 대한 고문사건을 확인하고 고문경찰관 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협은 고발장에서 「金權泰씨가 1985년 9월 4일부터 검찰에 송치된 26일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불고문 전기를 고문 등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은 또 「김씨의 몸에는 고문으로 생긴 흉터가 남아 있으며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고문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등을 엄중히 조사하여 의법처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金權泰씨 자신은 1985년 12월 19일의 공판에서 李敦明 洪性宇 金尙哲 黃仁喆 張基旭 변호사 등이 임의

은 케케묵은 일을 이제 와서 얘기하는 지의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오히려 고분 폭로자들에게 화살을 겨눈다. 당시의 金任植 공화당 부총무는 「자기자식도 귀어워서 껌 매가 있지 않은가」라고 고분과 愛撫의 等式論을 피력한다. 당시의 黃山 德범 부 장관은 「고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 소신에 따라 조사를 해왔다. 민서 「그러나 고분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논리적 실증이 간다. 「고분 언급한다. 엠네스티의 보고가 말한 그대로 고분하는 자와 고분당하는 자 이외에 그 사실을 부인하는 개 3자의 등장」을 신감케 하는 풍경이었다. 그 기류 속에서 고분의 전상이 暴露해져 가고도 명백하게 가리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나방사처와 신민당의 의원들의 폭로가 진실인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또한 진실이 아닌지도 헤아릴 길이 없다. 그 가운데서 쌓이오르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신일 뿐이다.

한 가운데, 그가 겪었다는 고문사실을 폭로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면, 식이도 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는 화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는 뜻도 바로 그 화성의 혼란림에서 연유한다. 고분폭로와 고분의 是非를 추궁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의 私見은 고분은 종식되어야 하며, 또한 이미 종식되었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따라서 나는 그 진상의 공개적이고도 공정한 조사를 주장한다. 누군가의 말대로 「논리적인 실증」이 있거나, 기꾸로 그 것이 없어야 이다. 진실에의 접근은 누구를 위해서나 손실될 수 없다. 만일 고분의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권력에 대한 모처럼의 신뢰 회복을 기약할 수 있다. 만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인된다면, 왜 고분이 있었어야 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고분은 없게 될 수 있는가의 처방을 얻게 될 것이다. 우선은 시비의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무명함 미유가 짐으로 그 진상의 해명대 동조하고 싶다. 모두가 미움을

떨림감이면 신경통은 치료됩니다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에
떨림감
 표준소매가격 10각생 3,500원
 한독약품

보고있어요

특특히 효과 큼

비우고 차분하고도 정당한 절차로, 그것도 누구나가 승복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이 주어 지야 한다. 그 마당에 부질없는 豫斷은 금물이다.

민력의 활력이 나라의 활력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은 인권의 옹호에 기초한다. 민주정치는 그 인권을 제대로 향유하는 민의自治에 서만 확립된다. 권대권력의 통치는 민주정치의 바른 이름일 수 없다. 통치라는 말이 용납된다면 그것은 민과 권력의 상호통치를 이룩할 뿐이다.

민을 고문해야 하고 고문할 수밖에 없는 권력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하다. 고문이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통성의 위약을 자인하거나, 또는 과장하고 싶은 권력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은 명쾌하다. 혹은 백이라고 우길 필요도

나라의 활력은 민의 활력의 총화이다. 그 총화는 민의 생명을 촉발하는 인권의 옹호 위에 서만 피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분명은 애용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제시하고 스스로 답안을 내놓았다. 그의 답안은 친제성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었다. 독립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산하는 인간 없이는 인류의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모범답안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는 데서만 기약된다.

그러나 민 또한 권리의 추구에만 매달린다면, 진정한 자유의 속속을 획득할 수는 없다. 「몽테스키외」가 시사했던 「속속적 자유」는 개인의 독립적인 기풍과 정신의 높이, 그리고 다양한 생활공간과 대화의 활성화 위에서만 도달되는 과녁이다.

그 속속적 자유의 속적이 없는 한, 권리를 쌓아 올리는 법제적 자유는 虛名의 空洞에 지나지 않는다. 기리검일이 만나고 기리검일이 토론하는 자유의 기풍만이 고문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를 소멸케 하는 大長征의 과녁이다. 자유는 공기와도 같다. 분장기도 이르고 고정시키기도 어렵다.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獨立不羈의 기풍을 이 땅에

없으려니와 백을 흑으로 오인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굳이 黑白이 분명치 않은 회색의 정황을 더욱 오래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 마디로 고문의 근절을 위한 결단만이 其生의 大道일 뿐이다.

엠펬스티의 보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 고문의 증식은 고문에 대한 증오심과 비합법성에 대한 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고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고문을 규탄하는 여론의 休眠은 고문의 종식을 위해서 유해로울 뿐 더러 나라의 활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에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말한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조차 용감하게 방어하려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기꺼이 바치려는 충성을 갖겠는가. 권리의 문제를 다만 물질적인 이익의 척도에서만 생각하는데 길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민족의 권리와 영예가 문제시되는 유사시에 그와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다른 결정을 갖도록 기 대한 수가 있던 말인가」

정착시켜야만 속속적 자유는 상승한다. 또한 그 속속적 자유가 흔들리면서도 유연한 기풍으로 정착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물론 구체적으로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권력의 자성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등 보다 현실적인 立法論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창출과 자유로운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개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청이다. 고문의 진상을 시인스럽게 밝히려고 공격적으로 고문을 근질시키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소중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민의 깨어남 위에서만 기약된다. 모두가 잠들어서는 안된다. 「바렌스」는 「인간이 모두 잠이 되기까지는 자유의 추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의 속속으로 깨어나 권리를 일깨워야만 진정한 자유의 새벽은 일어난다.

새벽의 종을 난타하면서, 민은 나라와 거래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상충될 수 있음을 자유의 바람으로 울려야 한다. 정착 강건한 나라와 거래의 안전은 개인의 발달한 자유에 기초하는 것임을 그 종소리로 울려야 한다. 알리야 한다.

ALTAI HOUSE

- 文 近思錄集註 聰明太子 朱 熹
 - 詩經今註今譯 TAO TE CHING D. C. LAU 道德經 王 弼
 - 莊子今註今譯(上·下) 莊子今註今譯(上·下) 胡 適
 - 史記會注考證(上·下) 史記會注考證(上·下) 胡 適
 - 中國古代哲學史 中國通史(上·下) 錢 穆
 - 古文觀止 王 力
 - 古代漢語 1-3 王 力
 - 古漢語通論 王 力
 - 漢語音韻學 王 力
 - 中國語的文法 趙 景 深
 - 中國文學批評史 郭 紹 儀
 - 現代中國文學史 李 輝 英
 - 華語大辭典 華語專集 1-4 張 其 成
 - 華語專集 1-6 張 其 成
 - 高僧傳(唐·宋·明·高僧) 高僧傳(唐·宋·明·高僧)
 - 宗鏡錄 1-8 智 度 師
 - 大明·教乘法數 大明·教乘法數
 - 禪學大辭典 1-3 釋 尊 大 師
 - 佛學大辭典 1-4 丁 福 保
 - 清學辭典 仙學辭典 河洛理數 抱朴子 伍柳仙宗 地理正宗 地理人子須知(上·下) 洪 自 誠
 - 梁啟超史學論著三種 近代中國史綱(上·下) 郭 紹 儀
 - 中 庸 注 康 有 為
 - 中國思想史 錢 穆
 - 其他 (原史·哲學·文學·天文·地理·易·武術·漢醫·美術·農林等)
- 政府登錄輸入藥體
알타이 하우스
中國書籍部
代表電話 765-007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23
(해운대)

특별기대 拷問

拷問、人類文明의 수치

韓 相 範
(東國大法政大教授·憲法學)

고문은 불법인데도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문명과 고문

고문도 사람의 발명품이다.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제재할 필요성이 하나 하나의 체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범법자나 적대자에게 대응하는 조치로서 고문이 생겨났다고 하겠다. 상식적으로 고문은 악사가 있고부터 있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국가, 또는 어떤 개인에게는 고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고문을 하는 것에 대해 인도상거리낌이 있어도 필요악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문의 비인도성과 불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개봉·인식시켜서 고문폐지를 명제화하게 한 계기를 이루게 되는 전 단계로서 18세기 프랑스 계몽시대의 사상가들의 업적을 들 수 있다. 「베카리아」가 대표적인 사상가로 기억되고 있지만, 「몽테뉴」도 그의 「수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문의 발명은 위대한 발명이다. 그것은 진실을 실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행기된다. 그래서 고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고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흔히 우리가 보는 악사사전에서는 고문을 「죄를 진취의가 있는 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심문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중서관의 「국어사전」),

준다 전문성을 띤 범법사전에서도 「피고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범법사전의 「법률사전」)이라고 하고 있다. 이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만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고통이나 모욕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좀더 정화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럽 인권위원회가 기리시아 사건에서 한 결의를 인용해 본다.

「고문이란 막대한 정보 자백의 획득이나 형벌을 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비인도적인 처치를 말하는데, 흔히 쓰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인도적인 처치의 가혹한 형태를 말한다. 비인도적인 처치란 잔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계획적으로 가하는 처치를 말하고 있다.」

문명탄압의 종교재판에서 혹독한 고문 자행세

고문은 상식적으로 이사와 함께 있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니엘 배니스」의 「고문의 역사」(1964)를 보면 고대로부터의 고문의 실상이 다각도로 시술되고 있다. 사람에게 가학적 세디즘적 소질이 잠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필요나 이단을 침투하는 방법, 또는 정치적 반대파를 응징하는 수단으로서, 정보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서 자행하는 등 다양한 동기와의 목적 아래서 고문이 공공인히 자행되어 왔다.

우리가 서양의 근대법제를 계수하고 있고, 그에 비하여 문금지 법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의성 시야에서의 고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자유민에 대해서도 고문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다만 노예의 증언은 고문을 기권 것이어야 했다.

고문이 일반시민에게도 미치게 된 것은 로마가 제국으로 확장되면서부터이다. 로마 제국에 의한 초기 기독교 탄압시기에 기독교도에 대한 고문은 유명한 사례로서 전해 온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고문이 금지되어도 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고문반대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1세기에는 고문이 다시 성하기 시작했고 13세기에 들어와 고문은 본격적으로 부활되어 중기 계시의 방법이기도 했다. 당시 고문관은 법집행관이기도 했다. 고문이 더욱 기세를 떨친 것은 이단심문에서였다. 스페인이 이단 탄압을 하던 시기에 종교재판에서 행하던 고문을 몹시 혹독한 것으로서, 이단자백을 하지 않고 고문에 의해 죽거나 이단임을 자백하고 화형에 처해 죽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의 고문이 성행하게 된 것은 유죄선고물 받은 이단자의 재산중 3분의 1은 고발자의 것이 되고, 3분의 1은

국가기 불수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고문을 반대

중세기에도 고문반대는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고문이 금지되어 불변화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을...

피고에 대한 고문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수권적으로 자행되는 야만행위이다. 누구든지 재판관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유죄로 추정당해서는 안된다.

근대 이전의 형사절차에서는 고문이 인정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가 자행되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란...

근대법에서 고문금지 보장은 대륙법과 영미법이 차이가 있다. 영미에서는 배심제같은 절차적 보장면에서 보다 앞...

고문금지, 고문의 불변화와 그 실상

대륙개법제를 기준으로 볼 때에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고문은 형사절차에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겠다.

은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이상...

가 법 앞에 부고한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는 고문에 의한 증거가 불합리하며 신빙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고문의 관습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묘한 관계로서, 무고한 사람이 범죄인보다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일...

「베카리아」의 사상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에서 공인되고 그것이 형사법으로 구체화된다.

「모든 사람은 유죄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을 받는다. 이민 사람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정확하지 못한 민도 있다.

위의 인대에서는 미국이 빠져 있다. 그것은 미주가 영국 식민지일 때에 이미 본국인 영국에서 고문금지 조치가 있...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를 둔 나라에 모두 해당된다. 프랑스가 자유평등 마에의 삼색깃발을 내세우지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고문은 정치제도의 일화이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정...

이정화할 가졌는가 하는 것에서 고문의 성격을 따지는 것이 정확할 전망이다. 아무리 법이 형식적으로 고문금지...

인 노에 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고분은 정치문화의 한 표현이고 정치수단의 한 기능이기도 해 온 것이 이른바 「후진적·권위주의적」 통치양식의 일환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와 한국 민중의 처지

일본도 1882년에 고분을 금지하는 법제를 만들었다.明治시대에 프랑스형법을 모방한 구형법에서 고분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도는 인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 자체가 시구 열강과 체기인 불평등 조약에서 벗어나자고 하면서 시구 제국주의 열강이 요구하는 「문명국 수준의 법률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889년에는 위헌적 임헌주의 체제로서 프리시아 정치제도를 모방한 「명치헌법」을 갖추고, 1890년대에 불평등조약 해소에 대한 대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갔다. 따라서 일제의 근대적 인권제도의 수렴이란 시구 제국주의를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를 실시하면서도 치안유지법이란 체제보위 입법이 따랐고, 그것이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가장 아용된 법이 되었다.

일제하에서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의 체제 반대파는 모두가 치안유지법의 규제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제는 케전시까지 치안유지법체제하의 사상통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관한 연구로서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이 한 연구도 많지만, 미국학자 「리차드 H 미첼」의

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음을 기피로이 사상전쟁 시대를 그들의 권력과 위신화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즉 사상계 검사라는 새로운 종족이 東京기지에서 확산되어, 1930년대에는 그들이 하나의 유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상태는 일본보다 더욱 열악하였으리라 하고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일제에 「합방」이란 이름으로 강압당하기 이전에 조선에선 唐律로서 형벌과 고문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법제 아래서 우리는 살아왔다. 이에 신탁과의 인사나 그 후 개화파에서 백성 위주로 보아야 한다는 민본주의가 유교적 민본주의의 단계를 넘어 인간존중의 차원으로 나타났었다. 한국의 개회 11년 내 국가로의 혁신이란 노력의 일환으로 표출된 甲申政變이 좌절된 이후, 林泳孝가 쓴 건백서에서 고분의 금지와 사형(원칙)의 폐지, 잔혹한 형벌의 금지, 재판의 공개 및 증거재판주의와 자유형제도가 주장된다. 1894년의 甲午개화안에서는 고분폐지 문제가 다시 나온다. 물론 그 이후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경찰제도 및 감옥제도가 장악되게 됨에 따라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이 일제의 법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가 남긴 좋지 못한 유산과 관계이다. 일제는 1910년 이른바 합방주에도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제도를 두었고, 일제의 헌법정치는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를 표방했지만 단암은 여전히 있다. 학교에서도 일본 신장은 복식으로 학생을 때렸고, 일제관청에 있어서 고분은 인정치된 습관이 있었다. 일제시대의 고분 실태를 연구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징용서에

「일제의 사상통제」가 보다 객관적인 실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치안유지법 아래서 일제의 고등경찰이나 헌병은 고분과 구금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다라이 마키시」(조리돌리기)를 행하였다. 그들은 또 구금제한 기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편법적 조치와 친족·인고자 친후배 등 가족주의적 관계를 이용한 실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방법 가운데서 결국 고분이나 조리돌리기(장기구금)가 가장 무서운 수단이었다고, 인척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구금당한 사람의 약한 심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어느 것이나 고분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둔 것이니, 치안유지법에 의한 교수형이 의외로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실적은 주로 고분과 회유가 활용되었던 데 기인한다.

일제는 고분을 통하여 체제 반대자를 옥사시키고 폐인을 만들며, 배신자가 되게 하여 사회적 사망선고를 당하게 했다. 그것은 사실상 고분의 자행은 동해시 이후 이전 것이었다. 박현이 무기수로써 일본감옥에서 살아남고, 일본 공산당 모장부가 종전때까지 범질하지 않아서 영웅이 된 것은 그들이 고분에 굴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친족·친지·동향선배·학교선생과 선배 등을 동원한 세뇌는 고분이 아닌 고분의 징신치 압력으로 보통 사람이 모르는 습관이 거닐 수 없는 시련이었다고 하는 것은 「미첼」의 지시는 잘 말해준다.

더우기 출세주의에 호르기 마련인 권료로서 사법판료가 그러한 서류에 편승하여 내부관료에 뒤설세라 앞장을 섰다고 한다. 즉 치안유지법의 기초과정이나 명제 제1부의 검거·기소에서 경찰과 주도권을 기루던 검찰관료는, 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가 8·15라고 하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서 피넨(속중회고록)이란 일제하 독립열사나 그에 관련된 분들의 고분 기록을 보고, 나는 이것은 밭도 없는 무덤 천지의 만행 황포이므로 법학적으로 연구할 가치도 없고 인구를 한다던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및 정치학적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가 8·15라고 하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서도 일제의 관료기구와 경찰 및 사법제도가 그대로 온존되어 왔기 때문에 각종 폐습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 점은 미군정시대에 경찰관의 가족행위를 금지하는 군정당국의 명령이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좌우부쟁과 6·25를 겪고 독재정권의 강권통치를 겪어 오면서, 그 나쁜 제끼기가 말끔히 씻어지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고분에 의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의 하나로 흔히 미국을 꼽는다. 또 미국의 제도도 가장 많이 참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유색인에게 공평한 나라도 아니고 장사꾼나라여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배설고, 사법절차에서도 검찰과 피의자·피고인사이에 기레가 있는가 하면 사법의 부패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본래의 법제의 틀을 지키면서 정의의 구현하려고 한다는 데서 미국의 강점을 본다. 미국이라고 해서 고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분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시정될 수 있는... 제기가 가능하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 로 조급색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미국의 감심이다. 「알란 마스」라는 신문인이 1963년에 피낸 책인 「비정행과 비정행」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미국 정황은」 비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고 인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고압적인」 수단 을 이용하지 않으면 범죄수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인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다」 경찰이나 수사관헌이 범죄인이나 반체제 인사를 쫓고 있다고 할 때에 그들과 상대방은 적대관계에 있고, 일단 경찰의 손아귀에 피의자가 들어오면 게임의 형세는 바뀌 어 「고압이와 생쥐」 기미와 기미줄에 붙은 짐자리와의 관계가 된다. 여기서 고문의 문제가 생긴다. 좀 오래된 기록이지만, 미국의 「피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국가위원회」 가 1931년에 낸 연구보고서인 「비합법적인 피의 집행」이란 문건을 보면 고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고문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 내지 자인을 획득하기 위해 육체적인 잔혹행위 또는 다른 형태의 잔혹행위의 자행은 일반적으로 널리 자행되고 있다. 구급당한 사람에 대한 장시간의 심문은 보통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위험이나 이리가지 형태의 협박은 피의자의 열병이나 지능에 맞추어서 단독 또는 이미 말한 방법의 어떤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피구급자를 신속하게 치안관사 앞에 출두시키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구급자를 신속하게 치안관사 앞에 출두시키도록 법에

고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닐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육체적 고문에서 정신적·정치적 고문으로

현대에 있어서 고문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가 고문의 문제로 되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겪은 것이지만, 현재는 좀더 그에 한발 앞섰다고 할까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30년대 소련의 「스탄린」의 숙청이 정경에 닮아 세뇌와 자백에 의한 재판 언급이 빈번할 때에 고문은 예전처럼 두드러지지 않거나 매다는 것에서 현실을 나아가서 정신적 심리적인 수법과 방법이 그 수적으로 보았을 때 있음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앞으로의 고문이 육체적인 고문 이외에 정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 압력과 세뇌가 널리 이용되게 되는 가할 상 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 - 친공산주의자인 「아더 키슬러」의 「백주의

李炳注 實錄大河小説

智異山

현대의 거대한 이품을 형상화한 민족의 대서사시!

해방 전후 현대사의 거대한 동기에 韓民族的의 고인이 매 울려 부는 울음으로 부딪치고 고뇌하며 피 흘려왔던 슬픈 아내는 민족의 대서사시이다.

• 권7권/가 권3,200권

기린인 715-9106 716-9479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찰은 이를 이기고 절전 끌고 무리하게 자백시키려고 한다. 피의자는 가족이나 친지·민호사 등과 접촉할 수 없도록 「집권금지」로 해부는 방식은 아주 빈번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권금지」이라고 불리는 독방이 있다. 또 피구급자가 구치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뒤에 집행된 심문에 고문 고문하게 따르게 되도록 체포할 때에 미리 하대나 폭행 을 가하는 일도 때때로 자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비직 질차와 기술면에서 고문을 없애기 위한 대응이 앞서고 있다는 점으로 이 점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 미국에서 경찰이나 수사관헌이 아무리 정화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것이 고문 등 직면한 절차에 위반해 취득한 것이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판결로서 세운 것이 있다. 그것이 유명한 「백나브」 사건(1943)의 원칙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포당한 후 오랫동안 경찰의 가혹한 심문을 통해 확보한 자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된 사건을 최고재판소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원심을 무효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의의는 절차상의 위법(비합법적 집행)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뢰」가 명한 절차를 명확히 무시하고 수집된 증거에 임의하여 재행된 유죄판결을 유효하다고 한다면 재판소 스스로가 고의로 비위반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고문의 문제는 나라마다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이 형사절차상의 유죄 증거 수집을 위한

암흑을 보면 충실한 공산당원이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것을 변명하 암면서 이른바 「당」을 위반하고 하는 명분 아래 세워 당해 인력에 지나지 않는 재판에서 자백을 하고는 총살 형으로 사형시키는 미국이 보지되어 있다. 정신적 심리적 으로 「세뇌」시킨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고문이다.

그리하면 세뇌를 정체가 이용되고 있고, 그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대중까지 세뇌시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 뜻 하는가?

우리는 20세기 말에 나찌에 의한 게티스터한 인종말 살정책과 각종 고문을 보았고, 일제의 혹독한 고문도 겪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심리적인 수법을 이용한 고문도 소련의 예에서 보았다. 북쪽의 공산주의 지도자 사전을 쓰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르조이적 죄악성이나 자 기생애의 과오를 되풀이해서 강조하며 세뇌한다고 하는 것을 6·25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 심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나타난 신생국가 중 권위주의 체제의 나라에서의 고문도 정치적 반대파를 무기력화시키는 무기로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고문의 만연에 대하여 일찌기 전서 전문위원이 나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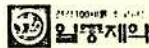
위·십이지장궤양에 1개월 단기요법

- 1일 1~2회 간편한 복용
- 1주일 증상 소실
- 1개월 단기 치료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11월 10일까지 60원 49,800원
20원 16,600원



포로에 대한 고문을 금하는 「1949년 8월 12일 제내바 협정의 성립을 비롯해서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에서 자유와 같이 선언했다.

「사람은 누구를 마른하고 고문을 받아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비열한 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에 잇따라 「인권과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제26조, 「아랍제국 시민권 선언」 제5조 등이 고문 금지를 명시했고, 「국제인권규약」(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규약) 제7조, 「인권에 관한 구라파 협약」 제3조 및 「인권에 관한 미주 협약」 제5조 등이 이를 다시 확인해 오고 있다.

고문은 안된다고 하는데도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민혁명 당시에는 범인의 자백을 받아낸다고 하는 목적으로 인도를 빈하고 합리성이 없는 고문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방치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여기에 현대의 고문이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에게 고문폐지운동에 호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이전에 의료관계자의 회의에서도 의사가 고문에 임하지 말 것을 결의하는 등 고문에 대한 거부·반대의 운동이 각 계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

여기서 국제사면위원회의 임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단체의 각종의 인도적 운동 이외에 1973년의 「고문에 관한 보고서」 및 1975년의 「소련에 있어서 양심수인」 등 두 가지 실적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문에 관한 보고서」는 서장, 제1장 고문의 의학적 심리학적 고찰, 제2장 범죄 구제 수단, 제3장 세계의 고문 실태 조사, 맺음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아」에서 1975년 1월호 별책부록으로 그 일부가 번역 소개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은 범죄수사 차원에서 벗어지는 일시적·잠정적인 과오가 아니다. 「소련에 있어서의 양심수인」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신병동에 갇힌 양심수인, 이 미시히 무기력화되어 가거나 죽음을 앞당기게 되어 있거나 하는 등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체적 정신적 고문도 본인에게 하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1972년에 창설되어 화신법 석방, 사형, 폐지 및 고문 폐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단체로서 영국에 본부가 있다. 우리에게도 알려진 국제단체이다. 이 단체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알고 있다. 이 단체는 1973년 파리에서 열린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선언을 냈다. 그 선언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고문에 관해 그 비인도성에 대해 들어온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시 고문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 단체에서 구체적 문제제기를 한 데 의의가 있다.

이 선언(2)는 「고문은 어떠한 이유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문을 통한 폭력은 누구적 악순환을 초래한다. 고문은 진압방치림이 아니라 저나라로 퍼져 나간다. 고문은 고문당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문하는 사람을 야수화한다」고 하면서 각 개인

것 이외에 그의 아내나 딸에게 가해하는, 말로서 다할 수 없는 작태가 나타나 따라 벌이 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고문에 관한 보고서」에 실린 말을 여기서 다시 본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도 고문 사용은 정당화하거나, 이를 사용한다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나 대량 살인을 정당화하고, 이 살인자를 유공자로 찬양하는 일이 있어도 고문하는 자를 유공자로 내세우진 않는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고문현상은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내란과 식민전쟁 및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문이 증대하는 보다 큰 원인은 통치의 수단으로서 고문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고문을 행정부적인 시민들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인다. 국민들의 동의없이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효과적인 정권 유지의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이 단서들에 고문을 가할 경우에 오직 소규모의 집단만이 정부에 반대하게 되고, 대다수는 공포로 침묵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잘 짜여진 위계수단을 이 고립된 소수에

복용하고 계십니까?

간장약 프로페라룸-골드

- ★ 간해독
- ★ 지방간 제거
- ★ 간기능 향상
- ★ 소외 촉진
- ★ 혈액순환 촉진

5중 효력의 종합간장약

프로페라룸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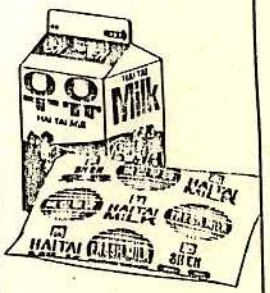
표준소매가격: 100원 9,000원



孔 質 第 一

좋은 사료를 먹으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낸 건강한 짐승만이 양질의 우유를 만드는데는 당연합니다.
헤테우유는 철저한 목장관리로 양질의 우유만을 목장에서 가장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헤테우유는 좋습니다



게 짐승할 수 있다. 고분이 화산되는 현상 그 자체도 놀랍지만, 특히 놀라운 것은 고분을 규탄하는 여론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수긍하거나, 공공연히 수긍한다고 칭명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현대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 국제사민위회의 보고서가 나온 지 10이년이 지났지만, 나관할 만한 정후는 별로 없다.

遵法의 逸脫은 체제준립을 위태롭게 해

국제사민위회의의 「고분에 관한 보고서」의 맺음말 첫머리에, 「헌재 고분을 그치게 할 효과적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체념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고분의 근원은 인류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이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고분을 방지하고 방지하려는 대책이 끊임없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부패추진의 권리, 고분의 금지

을 통하지 아니한 적대적 투쟁관계가 된다. 그렇게 될 때에는 부제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체제즉이나 관헌으로서도 적법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기반을 상실해서 체제 준립의 정당성 자체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나가자 않게 하는 것이 관헌의 최소한의 자제이고 체제유지의 방편이기도 할 것이다.

고분의 문제가 정치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권력의 남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고분이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정치적 사회적 대응이 적절하게 따라야 한다.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문제로서 고분의 문제의 해결에 공식적으로 국내적인 조치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를 냉철하게 인식하여 고문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이 법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용되어야 잘못이 바로잡아지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어느 나라도 고분을 인정한다고 하진 않는다. 어느 개인도 아버지나 남편이나 자식으로 고분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놓고 말하는

서울프라자호텔은 불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아내가장이나 회사에서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서비스는 소중한 모임들을 더욱 만족스럽게 준비해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연회도 진화하여 주시는데 선배 맞추어 실속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출장 시에는 가빈저택우주호텔은 연회할 시설을 갖춘 프라자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문의: 전화 771-22 호관 7745-7749

서울프라자호텔

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거부권,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때의 증거능력 부인과 자백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물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장의 「가능조건」이 이루어야 하게 되어 있다. 권리란 지키고 실현하고 그 를 위해서 법적으로 여러 조치를 강구하여 싸워서 얻어야 만 자기의 것이 된다. 국제사민위회의의 보고서의 맺음말 에서 인용하여 이 문제를 다시 보자.

보고서는 「고분은 어느 사회에서도 있게 된다」고 하면서 특히 「고분은 격렬한 대립·상극이 있는 상황에서 생긴다」고 한다. 비상사태에서는 법이 침묵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치가 정상화 되기 위한 과정에서 고분의 악습을 뿌리뽑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은 법률문제로서 피해자가 되는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해자일 가능성도 항상 내포한 관헌으로서도 최소한의 준법의 문제이다. 나아가서 준법의 일탈이 관헌에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례가 된다면 이미 법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투쟁조차도 법

사람이 없다. 법정에서도 고분에 의한 증거를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법이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일면한 사실이다. 몇 년전에 한일합심 이사 김보씨가 부산에서 심문을 받던 중 죽었다. 고문으로 말미암은 사망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임벌해야 한다고 하다가 관헌에 의한 고문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한 수밖에 없이 그 형이 가벼우니 형벌을 개징·보완해야 한다고 떠들썩하다가 그대로 지나쳐 지극에 이르고 있다.

임벌주의자인 법률의 태응도 중요하지만, 공적자의 준법과 시민의 인권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법이 까다롭고 빈거유지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 오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모두 무시 제도로 구현한 것이므로 어느 편에서든 법을 지킨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약한 편이 이을 하지 않게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때고 자유와 권리는 갈등과 투쟁 속에서 국권을 잃으면서 얻고, 또한 은 것이 지켜진다고 하는 진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 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고문문제에선 더욱 진실한 것이다. □

특별기문 拷問

權力과 拷問

고문은 고문을 남용한 권력자를 비열하게 만들고
기만자가 되게 하며, 자신도 인젠가 보복당하지 않
을까 하는 공포를 심어주어 기이이 狂亂케 한다.

金 尙 哲 (編譯上)

텔레비전 영화 「대학살」을 보는 심경

유대인 대학살의 참상을 주제로 한 5부작의 텔레비전
영화 「홀로코스트」(Holocaust 대학살)는 많은 고뇌와 감동
을 주었다. 비스에서 내리는 정신질환자들을 줄줄이 대기
실치립보는 가스실로 안내하여 밧장을 질러 문장 죽음
의 개스를 틀어넣는 의료관계자들의 일심적 표정과 그 눈
빛, 「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나찌제도의 부속에서 나타나
것없이 모두를 유대인 말살의 공범자로 만들어 가는 완고
한 관료체제, 작은 영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 「제기」
의 피를 내어가는 법률가 출신 「도르프」 소령이 시시히 피

개되고 파괴되는 과정, 체념의 상태로 속절없이 죽음의 골
짜기로, 사위장이라 불리지는 개스실로 줄을 지어 가는 부
리들,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한 가족성원들의 생생한
살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최근까지, 그것도 최고의 문명
민족을 자치한 사물에 의하여 자행된 인간말살의 역사 있
다.
그 映像들은 우리에게 우선 일본군규주의의 식민지 처
하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해방 梓 복한의 공산화과정에서
강행된 숙청의 과정들, 여기에 6·25의 대침상 등 우리의
역사가 생생하게 되찍이진다.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그
잔혹스런 역사와 동시대 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눈물길도
룩 다행스럽다.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들 내포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야말로 본질적 가치이고, 인간과 존엄
은 모든 체제는쟁을 초월한다.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거나, 그럴 듯한 체제안보
또는 권력안보의 논리로써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해
손시키는 기도는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명
분은 논리적으로도 본말의 전도이며, 실제로는 권력의 도
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체포와 拷問이 뜻하는 것

「출제니친」은 「收容所群島」에서 소비에트치하에서의 체
포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체포!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정동으로 떨어진 청천벽력과도 다를 바가 없
다.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다. 그래
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을 감당해내지 못해 곧
잘 마치 버리고 만다.
「당신은 커트되었소」라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신의 우주와 그 중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것은
로만사는 끝장이다. 당신은 이제 체포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
저양의 울음소리 같은 치명찬 목소리를 낼 뿐이다. 「네
가? 무엇 때문에?.....」
죄면, 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체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파괴시키기에 족하다. 이제 자유로와질 수 있는 지

구할 수가 없다. 무한정이라도 구급될 수 있고, 아무런
변론조차 받지 못하거나 정식적 변론의 구색만 갖춘 상태
에서 감옥으로도 보내지고 강제수용소로도 보내지며, 아
무도 모르게 또는 공식적으로도 처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만으로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
체포, 구급과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이 살아 있는 경우에
도 만일 고문이 지행된다면 이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된
다. 고문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이고 無法이
다. 고문의 상황에서 「직법정차」는 공언불이다.
고문은 고문보다는 공포다. 죽음의 공포다. 고문은 無
法の 세계라기보다 獸心の 場이다. 고문당하는 것이 공포
이고, 고문을 하는 것도 공포다.
10여년 전의 영화 「생사의 고백」을 본 사람이면, 다만
잠안 재우기 고문의 이러한 모습만이라도 경험하였을 것
이다. 이제 공개법정에 서서 다른 수심명의 기과성과 같은
전직 피고인들이 마치 지송의 사람처럼 되어 입만 달막단
마하면서 고문받은 대로 차배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공포와 혼란을 간신히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
고 말하는 순간 자기 미이크는 꺼지고 법정에는 눈물된 자
백이 스피키로 나올 때의 주인공의 그 참담한 절망감이 선
하게 떠오른다.
우리의 법정엔, 아니 우리의 집안에서까지도 고문의 폭
로는 비록 권장되지는 않으나 불가능하지 않다. 정녕 이
사법질차의 제도는 귀중한 것이다. 죽음과 더불어 몸부림
치던 고문의 현상으로부터 실로 빈기 지 않는 빛의 세계로,
그리고 법정질차의 무대로 옮겨지면서 이미 죽어 버렸을 것
같았던 인간성이 소생을 시작하는 이 문명의 제도야말로

기적과 같은 것이다. 고문의 고동들이 시시히 통함으로 분노로 바뀌어 가는 것은 그 다음이다. 여기 요즈음의 어떤 기록을 옮겨 본다.

해가 서쪽으로 비껴 서는 오후가 되면 인왕산 건너리는 타오른다. 셋노란 불길꽃 타오른다. 노오란 노이름으로 타오르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노이름으로 타오른다. 쏟아지는 햇빛 단뿔 받은 건너리는 셋노란 노이름으로 불타오르는 것이다. 앞은 골짜기 어귀지기 미암의 엄웅 달진 곳에 붉은 일류이 보인다. 노랑 천지 속에 얼핏 보이는 이것은, 불그스레한 그 범집은 무엇인가. 작년 9월 아 그곳에서 내가 토해내던 울부짖음의 파편이 튀어서 저리 붉게 피어나는가. 불고문에, 불고문에 바스라졌던 내 녀의 한 조각이 다시 새롭게 불을라 한 무더기 진달래로 피었는가.

고문에 대한 공개적 폭로와 추궁이 주로 범징과 의사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곳에서는 공개가 범징으로 보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문추궁에 대한 정부당국의 답변은 항상, 고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는 말로 요약된다. 그러나 고문이란 것이 있을 수도 없다 는 것은 분명 조리에 닿지 않는 말이다. 힘 있는 자는 충동을 자제치 않는다. 다만 얼마든지 힘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다. 권력 행사에 대한 범징 제한이 가해지지 아니하였거나 지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권력도 고문의 유효성을 물리치지 어리운 범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태도침명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 과연 정치권력과 치안 당국에서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면, 어쨌든 죽는 사람이 다지는 안 생기도록 유석을 분빙 히 가려 제판을 해주십시오... 위의 冤罪사건을 추적 취재한 기자(趙甲濟)가 그 후 정찰을 떠난 뒤 사건의 수사형사 3명에게 고문 여부 물을 으니, "그런 수사에서 손을 안 댈 수가 있느냐"는 한결같은 대답이었다고 한다.

고문은 어쨌든 범인, 무고한 사람 수까지도 만들어 별편 이나, 진범의 경우에도 억울함과 힘을 남게 하고 사법절 차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자기의 범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새로운 범죄, 더욱 가증스러운 새로운 폭력에 대하여 사범이 의견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범은 더 이상 신성한 권위나 공정의 신뢰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입증하는 또 다른 불만을 사범이라는 이름의 권위로 용인하였으며, 고문에 의한 증거 곧 범죄의 산물을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有罪必罰論은 대체로 고문불가피론으로 빠질 위험 이 크다. 이러한 신념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그러한 중죄 의 억울한 苦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리라는 근거없는 자 기 괴신에서 비롯된다. 실은 타인에 대하여는 일고하지도 아니하는 원시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스스로 또는 현혹이라도 그 지경을 깊이 보는 날 곧 뼈아픈 죄함과 원한에 치를 떤게 될 것이다.

중죄와 경죄, 강력범과 또는 파렴치범과 지능범의 구별 은 실로 가내적이다. 수사권력의 황포스런 자의와 군중의 비탄은 어떠한 추상적 경죄조차도 중죄로 다룰 수 있다. 이때 "고문은 불가피하다"의 원칙을 적용시키려 들 것이 다. 결국 누구나 고문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물론 고문

우리는 구체적인 고문사태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이거나 우발적인 실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지 형식적 명분을 위한 修辭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고문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실질적인 토론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의 "고문은 결코 있어서 는 안 된다"는 예외없는 원칙의 강조는 비록 수사라 할지 인정 값어치 있는 것이다. 아무도 고문불가피론을 공개적 으로 강변할 수는 없다는 가이드라인이나마 확립된 셈이 기 때문이다.

고문의 위험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 누구나 주위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사건에 시라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범인을 색출하여 범법에 처해야 한다는 기침없는 주장들을 들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드리내놓고 말하지는 않으나 총통에서 이를 믿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情誼와의 한일공범으로 사형확정되어 79년 9월 13일 형장의 어슬로 시라진 오회 응세가 유인으로 남긴 다음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담당하고도 당당하게 말하고 죽어갔으나 사형집행에 참이한 사람들의 마음은 일이부었다 한다.

"나는 결코 죽이지 않았읍니다. 사형은 억울합니다. 도 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범법적으로 지 는 무죄입니다. 내가 무고하다는 것은 하느님도 알고 있 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나와 같이 진문가조차도 줄지에 자기 자신이 고문당하게 될 수도 있 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이 성숙하여졌다. 高淑鍾어인에 대하여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 로 무죄가 선고되자, 비록 경찰은 계속 협의를 풀지 아니 하고, 결국 尹노과살해사건은 영원한 미궁으로 빠져 버리 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司法에 감계를 보내었 다. 朴商恩양 살인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물리적 폭력"이 이 자백을 받아낸 柳載昌군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기 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이로써 살인범은 오리무중 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데도 사범에 대한 신뢰는 오히 리 고양되었다. 이 두 가지 판결로써 지어도 강력범에 관 한 한 우리는 가히 인권신장의 큰 밑거름을 내디딘 것이 다. 그것은 사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적이었다.

問諜이라면 몰라도

어느 重鐵 법관이 고문사태가 화제로 오를 사석에서, "간 첩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문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무의식중에 발신한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비록 김찰에서 잔침힘의를 벗고 범원에서는 진부 무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잔침으로 화신 한 나머지 영장도 없이 수심만을 가두고 고문을 하였던 사 레었다.

고문에 관하여 "간첩이라면 몰라도" "간첩도 아닌데"라 는 수식은 아마도 우리사회의 지배적 분위기를 나타내

는 것이지도 모른다. 그 뜻은 만일 간첩이라면 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고문불가피의 예외론을 함축한

그런데, 결과적으로 간첩이 아니었다면 그 고문은 불법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 것인가. 불법하다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어떤 정도를 가리켜 상당한 이유가 다할 것인가.

아니, 도대체 어떤 행위까지가 간첩이며, 간첩방조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간첩은 고문할 수 있는데, 간첩방조나 편의제공은 고문할 수 없는가. 편의제공까지는 고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도 유사한 國事犯인데, 이 경우에도 고문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실로 의문의 꼬리는 한이 없다.

해석에 따라지는 모든 종류의 국사범의 진범, 국사범의 죄상이 농후한 자, 농후하지는 않으나 수사관의 유감으로 보편 불명히 의심되는 자, 불명하지는 않으나 그 비슷한 자, 국사범은 아니지만 국사범과 다를 바 없는 자, 아니 그렇고 그런 자는 모두 고문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얼마든지 비약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용공분자라는 낙인은 天刑이나 다름없다. 형의 집행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취입은 법률상으로 제한받고 사실상은 불가능하다시피 되어 있다. 인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익을 받는다.

법률전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원에 의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없이 인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지내는 75일, 많게는 1백16일간의 장기 불법구속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의 精神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불법구속되고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감내할 수 없는 신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사진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위 수사원들이 구치소에 민첩을 와서는 전에 한 자매대로 모든 사실을 시인하여 동정을 받을 것과,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시 수사기관으로 데리가지 조사하겠다고 동치유와 위협을 하였을 뿐 아니라, 김사의 조사 때 부인을 하던 다른 사람은 다시 인하는데 혼자만 빠져 나갈 수 있으나, 끝내 고집하면 되돌려 보내겠다고 강압할 수 있으나, 끝내 고집하면 되돌려 보내겠다고 강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형의 사실을 부인하여도 아랑곳없이 전수사기관에서의 조서를 읽어 주기에 하는 수 없이 형의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장의 회보에 의하면 김사가 위 구치소에 입하여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위 수사원들이 피고인 A·B를 면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한 신체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알을 가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하에서 任意性 없는 것이라 고의의 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자 피의자 신분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서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단정하였음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만일, 고문에 의하여 허위 자백이 강요되고, 이후 이차 여차한 사실으로 인하여 그 자백이 빈번되지 아니하여 기어 이 유죄판결을 면치 못한 경우라면 그 인간존엄의 파괴와 전인적 파멸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반공과업에서는 아직도 유감이 없으나 인도적 입장에서 파오가 많았다」는 유의 범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이치이다. 유신처하의 긴급조치 아래서 人權濫用者 8명은 대법인의 사형화정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75년 4월 9일 새벽 모두 처형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64년에 인형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로 구속되었으나 검찰의 항명과 동을 거쳐 단순한 반공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단 두 명 외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위 긴급조치하에서 기소될 때는 특별히 반국가단체구성의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형판결을 받은 8명은 처형되었으나,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실로 죽음과 자유의 차이가 단 한 치의 차이였다. 이 사건은 반드시 역사적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판결

여기에서 어떤 한 사건에 관한 두 가지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각법이 보는 고문, 특히 공안사건에 있어서의 고문에 대한 입장을 같이 유미해 보고자 한다. 83년 8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法理를 오해하여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써 이른바 공안사건에 있어서도 증거의 불법구속과 고문을 받아 이와 관련된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하에서 김사에게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구체적 선례가 확립되는 듯하였다. 한편 김사 이외의 일선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법정에서 내용만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지도 못함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문에 의한 자백문제는 김사앞에서의 자백만이 문제되는 것이다.

任意性의 이부가 문제

그런데, 바로 같은 사건의 滯送 후 고문판결에 대한 84년 4월 24일자 대법원 판결은 앞의 대법원판결과는 다음과 같이 의견상 약간,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달리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백이 同條 소정의 자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써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위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위 사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

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피고인의 자백이 위사유로 임의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自白만이 有罪의 증거인가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보면 그것은 단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하지는 않으나 「증거능력이 있는 때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위 두번째 대법원판결이 세운이론에 따라 還送審인 高法은 검사 앞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사정)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이부에 관하여 주로 검찰의 참이主事, 원 수사원과 교도관 등에 대한 증거조사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수사원이 직접 참이한 바 없고, 검사나 참이主事が 신문과정에서

써, 장기의 불법구금과 고문사실이 전제된 위 사건은 3회의 고문판결과 3회의 대법원판결을 거쳤으나 기이 대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화정되고 다만 형량만이 대폭 감하여진 채 확정되었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아무리 일선 수사기관에서 죄장 1백16일간을 영장도 없이 외부인력이 차단된 채 불법구금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라도, 그 후 검사 앞에서 특별히 새로운 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닐대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만 것이다. 만일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공포와 불안으로 위축된 심리로 진술에 응치되더라도 검사 앞에서만 절대 허위의 자백을 아니한다면 고문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를 기대하기는 지대한 일이 아닐 수 없

고문, 협박을 가하거나 부인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한 바 없이 통상적인 신문 관례대로 조사한 사실, 조서의 내용이 조리정연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조서에는 변경된 내용이거나 부인하는 부분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서의 말미 부분에는 죄상을 누워 있고 있으니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 또한 그 심방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교도관의 계호를 받게 되고 수사의 주체가 검사로 바뀌어 새로이 수사가 시작됨을 알고 있어 이제 그의 사대로 말할 자오로 검사를 대면 진술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수사원이 피고인 감, 을에 대하여 빈담한 것 중 검사에 대하여 사실을 부인한 직후의 1, 2회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직무상의 빈담이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통상인 정도의 사건, 경합 등을 가지고 있는 등 만약 자백을 하였다가는 그 자백을 기초로 임종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위협성을 잘 알고 있는...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바, 검찰에서 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前조사단계에서의 불안스러운 심리의 추이에 대비하여 한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백진술이라고 인정되어, 위 임의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들의 자백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들,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고문판결이 84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

다.

고문은 본래적으로 신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엘리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문은 일종의 침입이다. 질문이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희생자의 삶을 도리내를 칼과도 같다. 신문자는 찾아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직재로만 저 보고 배워야 해 드리내놓고 싶어한다. 신문자는 진리의 오차도 없는 외과의사처럼 인간의 내부에 피고는다. 그는 피신문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피신문자를 살아 있게 한다. 그는 보다 피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체의 어떤 기관을 마취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특별한 외과의사인 것이다. 그러나 고문이 범죄사실의 추궁과 같은 신문의 수단으

당뇨병

漢方으로 치료에 개가!!

체장의 8세포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혈관장애의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것.
합병증 예방과 동시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장기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공복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적절한식이요법을 할 수 있다.

자가 300 주분
신분은 동봉
요신분은 동봉
당뇨요약 필요하우표
필요하우표
필요하우표

한방당뇨교실

대구우체국
사서함 216호
우편번호 630

로시가 아니라 단지 보복과 威嚇의 목적이요. 민이 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71년 10월 吳致成(吳)의 관에 대한 해인건의안 가결과 관련된 이른바 韓明과 金成坤 等在號씨 등에게 가해진 인색적 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직후에 발동된 위수령 때 고대생들에게 가해진 일종의 집단적 테러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인 72년 10월 17일 이른바 유신을 위한 헌정중단 직후에 이루어진 金相賢씨 등 특종의 원들에게 가해진 無限 拷問도 본질적으로는 보복과 공포심 유발을 위한 것이었다. 세상이 바뀌자, 그 진상들은 친하여 공개되었다. 이러한 고분은 결코 법의 세기가 아니라 권력의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야생적인 폭력에 불과하다. 다시 「엘리아스 카네티」의 글을 인용해 본다.

「폭력이라는 말은 그 효과와 즉각적이고 가까운 것, 권력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그 무엇을 시사해 준다. 「불리적 폭력」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며, 낮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권력은 언제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데 이유가 있을 때는 권력이 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순간이 도래할 때는 순수한 폭력으로 되돌아간다. 권력은 폭력보다도 더 일반적이고 행해지는 공간도 더 넓으며, 더욱 포괄적이지만, 더動的이지는 않다」

고분은 당하는 사람에게서 인간의 존엄을 잇아가고, 능욕의 수칙과 한을 심어 주며 인간성까지 파괴한다. 그리고 고분자 스스로의 정신까지도 파괴해서 종내에는 정신병자가 되게 하거나 野獸로 변질시킨다. 고분은 권력자를 비

정우 단한 것인데, 법관이 그들에게 과한 형기는 고작 3년 정도밖에 못미쳤다.

심지어 경찰서 정보국장 등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하여 6일간 영장없이 경찰서 정보계 조사실과 보호실 등에 구금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무힘의 결정은 내린 데 대한 裁定申訴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속영장발부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구금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막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서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高法院에서는 「검사의 무힘의 불기소처분이 일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경찰관들이 수사업무에 지나친 열성을 보이다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10년 내지 30년간 바다를 과오없이 집행업무에 종사해 온 사관들이며 잘못을 짚이 뒤우치고 있는 집단을 고려할 때 불기소처분은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서 재차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불법구금 등은 모두 「지나친 열성」 때문인 것이며, 경찰관 중에서 「10년 이상」 「민다를 과오 없이」(심지어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으며) 임무에 종사해 오지 아니한 경우는 최소한 것이다. 결국, 불법구금 과오행위기 성립되더라도 모두 기소유예로 불기소시켜야 상당하다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들은 어야 일치하여 김근조씨 고분자사건이 발발하자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구금 및 과오행위의 致死傷罪를 特加法으로 처벌코 하여 형량을 대폭 올렸던 것이다.

시지스틴 에가 되겠으나, 미국에서는 최고재판소가 휘립한 「백나브 백로리 물」 「미란다 물」 등의 선례에 따라

열하게 만들고 기만자가 되게 하며 스스로에게도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고 공포를 심어 주어 기이 광란케 한다. 은메시키는 자, 외민하는 자까지도 비열하게 만든다.

고분의 효과는 단지 공포뿐이다. 그 대가는 원함과 저항이다. 원함과 저항은 반대의 공포를 유발시킨다. 만일 권력자 스스로 고분의 사례와 제도에 종인을 고하게 하기로 결심한다면 방책은 간단하다. 고분자를 치단하고, 고분의 희생자는 실사 죄가 있더라도 고분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방면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고분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고분이 근절된 나라에서도 안보와 치안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고, 고분의 희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석방된 자가 범죄적 인물이라면 인젠가 제벌을 할 때 미명판 형벌을 내림으로써 크게 잘못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권력자에 의하여 고분이 지시되거나 조장되고 은폐 비호될 때, 고분공식을 위한 폭로, 고발과 규탄의 長征이 한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분과 불법의 체포·감금에 대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拷問의 終焉을 위하여

그러나 85년도 대한민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에서 지적된 고문과 인권침해 사례들에 관하여 조차 아적 단한 사람의 관계자도 처벌되거나 공식 인제된 바 없다. 아니 최근 수십년의 상황을 통하여 고문으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는 한일합성의 金根祖이사를 고분 처사시킨 경찰관들의

체포 후 수사장내에 민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한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구금중의 모든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절차의 적정」이념에 의하여 고분 협력 죄 등 일체의 불법수사는 그 자체로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래의 기각사유가 된다. 「독나무의 열매」라는 이론에 따라 불법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는 그것이 유죄일 수 없는 증거물일지라도 사법의 廉潔과 권위를 위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야 모두 민주화 개혁의 원칙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양상이다. 민주화는 개혁이 될 때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무슨 법령정비 같은 작업이 아니다. 기본권에 관한 한 헌법의 헌법도 훌륭하게 분명 국가의 표상들을 명명하지 내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열선의 자유와 고분의 금지는 명명백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열선의 자유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한 여압바달되거나 심지어 고문까지 자행되는 실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실태에서, 또한 기본권의 이러한 본질적 침해에 대한 공개가 제한다고 억압되는 상황에서 「民主化」가 과연 어떤 개념인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민호사단체가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보고서, 진정서를 낸 사건들이라도 공청하고 사례에 맞는 수사와 조서, 상응한 조치들이 취하여질 때 비로소 「민주화」의 개념이 정당한 의미로 가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 사건으로 민주화평년운동연합 전의장 金權泰씨 고문사건, 서울노동운동연합 金文洙씨 등 고문사건, 교도소내 폭력사건, 그리고 최근의 富川拷問 고문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拷問後遺症을 위한 특별기법

拷問後遺症에 시달리는 사람들

成 河 雲

(東亞日報科學部記者)

심각한 고문 후유증

대한민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民青聯 前의장 金權泰 씨 고문사건」과 관련된, 검찰총장에 게 고발장을 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개류중인 김씨의 「고문사건」에 관한 이 고발장은 김씨가 고문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고문 후유증」으로 9월 13일 이후...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뻔하고 있으며,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 걸지도 못한다고 하며, 교도관의 말도 김근태는 믿지 못하며, 잘 걸지도 못하며 감방에서 빈 호인 걸진선까지 나오자면 30분도 걸린다」고 쓰고 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구타 불고분 전기고문진 기봉고문 등 약 10개의 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말 만국가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80년대 초반에 풀려난 김모씨는 고문받은 지 7년이 지나도록 오른쪽 다리의 아래부분에 감각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목을 묶어 매다는 고문으로 손에서 팔

뚝 끼지도 감각 이상이 있었다가 23년이 지나면서야 점차 풀렸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도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쭈시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또, 70년대 말 학생대모 투동자의 한 사람으로 구속됐다가 1년이 채 안 돼 풀려났던 고모양은 그 다음해 학교에 복학했으나 학교성적이 극히 불량. 그 다음해에 자진퇴교를 했다. 주위에서는 고모양이 고문을 받아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캐나다의 타론토에서 있었던 일이. 리비아 메리카에서 망명온 한 남자(26)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 찾아온 이민자들이 라인에를 2개가 든 선물 꾸러미를 크게 주자 공포로 온몸이 굳어졌다. 이 망명자는 고국에서 軍보 안요인들이 몇몇 수감자들을 난도질 해 죽이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왔다. 살인자들은 사립을 죽이고 난 뒤 그 자리에서 피눈은 칼로 잘인은 단연에 몸을 잘라 그 조각을 나눠 먹었다.

캐나다에 망명은 또 한 이민은 김은 백 포드 송용치를 보민 인쇄나 공포종대를 일으켰다. 그녀는 검은색 포드

송용차에 강제로 태워진 뒤 비밀 수감 장소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고문피해자들 가운데는 浴室에 들어가 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욕실의 타일과 불빛, 냄새가 자신이 고문 받았던 방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고문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광택이 곳곳에 널려 있는 곳인 것이다.

고문피해자들은 고문 당시의 심각한 상처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 계속되는 악몽이나 가치관에 대한 회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오랫동안 감수해야 한다.

스트레스질환과 유사

英國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옹호단체인 국제사민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 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98개국이 고문을 행하고 있으며, 이중 30개국은 조지기로 고문을 수사와 정치적인 압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민위원회는 특히 이란 철

레 리비아 파키스탄 터키를 고문이 심한 나라로 보고 있다. 매년 고문피해를 당하고 보는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러 있고, 아마도 이중 1천 명이 넘는 고문 끝에 살아남아 지방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고문 피해자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전병에 걸린 사람이 정명되지센터(CDC)에 신고해야 동기가 잡히듯, 고문도 피 고문자가 고문 사실을 밝혀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는 재현되어 있지만 美과학진흥회(AAAS)의 「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위원회」의 「에릭 스토비」와 「에레나 나이트」가 「박사들이 최근 단행 본을 간행해 제시한 바로는, 모든 고문피해자

고문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무력감, 높은 기억 손상, 우울증이나 불면증, 계속되는 악몽이나 가치관에 대한 회의 등 정신적인 고통을 오랫동안 감수해야 한다.

들은 무심한 위생화와 사생회의 부
정 및 부당한 대우라는 공통의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친 고분의 영향은 의학
적으로는 의상 뒤의 스트레스집화와
유사한 고분증후군이 한 용어로서 설명
된다.

1974년 후반에 설립된 국제사
면위원회 소속 덴마크의료그룹은 75
년 4월 고분피해자들에 대한 첫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79년 12월 8,
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집단수용
소 프로인질 및 고분피해자들의 후유
증과 再活」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
나에서 모두 2백명의 고분피해자들
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이 세미나는 78년 3월 그리스의 아
테네에서 열린 고분피해자들의 후유
증과 의료진들에게 대한 첫 국제세미
나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코펜하겐
세미나에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
이 네덜란드 캐나다 에이데공화국 등
에서도 상당수의 의사와 간호원 및 처
과의사들이 참여했는데, 이때 발표된
주요 논문은 이듬해로 된 「덴마크의
학회보」(Danish Medical Bulletin) 80
년 11월 특별호에 실렸다.

질문은 조사대상자의 90%가 조사
당시까지도 고분과 함께 발생했거나
고분 뒤에 생긴 것까지 증상을 일으켰
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였다.

- 〈표 1〉 병적인 표지
- 피부손상... 21%
 - 신경이상... 18%
 - 심신이상... 14%
 - 공황과 만우의 후유증... 15%
 - 기타... 27%
- 〈표 2〉 신경과 감각 이상증상
- 두통... 36%
 - 발열이상... 15%
 - 시력이상... 14%
 - 얼굴과면... 11%
 - 이성감각... 6%
 - 현기증... 4%
 - 〈표 3〉 비신경계통의 증상
 - 소화기관... 32%
 - 관절통증... 6%
 - 心肺... 22%
 - 모방이상... 17%
 - 의상과 관련된 통증... 13%
 - 기타 증상... 18%
 - 〈표 4〉 고분 형태
 - 구타... 93%
 - 머리손상... 62%

덴마크의료그룹은 2백명의 고분피
해자들 중 1백35명에 대한 조사를 완
결시켰다. 고분피해자들은 대부분
조사 당시 고분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고분피해자들의 국적
은 칠레 그리스 스웨덴 북아일랜드 아
르헨티나 등이었고, 나이별로는 20
~ 29세가 50%, 이 중 여자가 26명으
로 약 20%에 달했다.

조사는 2명의 의사가 2~5시간
동안 고분피해자와 말을 주고받는 식
으로 진행했으며, 고분 전과 고분 뒤
및 조사 시점에서의 건강상태가 질문
의 대상이 되었다. 고분피해자들 중
몇몇은 X선촬영 신경정신의학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AT)을 받았다.

고분피해자들의 諸症狀

조사대상자 1백35명 가운데 90%
는 고분 뒤 바로 생긴 이리가지 증상
을 호소했다. 62%는 조사 당시에도
진으로 과도 병적인 표지가 있었다.
(표 1) 참조) 이들 표지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것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조사대상자의 75%가 정신의학적 이
상을 한두 가지씩 호소했다는 점이

- 적절한 생식기 손상... 33%
- 손가락 또는 발가락 손상... 30%
- 진기고분... 42%
- 화상(예... 담배)... 8%
- 照明고분... 7%
- 약물고분... 7%
- 치아고분... 7%
- 48시간 이상 잠안제우기... 30%
- 2주 이상 독방살이... 37%
- 48시간 이상 굶기거나 불안주기... 21%
-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위협... 33%
- 다른 사람이 고분당하는 것을 보거나
고분받는 소리 들리기... 31%
- 모의 사형... 36%
- 기타 정신고분(위협, 면식, 신경소모
등)... 27%
- 매달기... 27%
- 물고분(욕조 등에 강제로 얼굴을 넣게
해 물줄기 마시게 함)... 19%
- 체력소모... 17%
- 기타... 27%
- 〈표 5〉 가장 흔한 증상
1. 기억력 또는 집중력 상실
 2. 두통
 3. 일과과민
 4. 수면이상
 5. 정신장애
 6. 상기능장애

다. 이들이 호소한 정신의학적 이상
은 기억력 및 집중력 상실(45%) 정신
병 증상(48%) 수면 곤란(47%) 이나
상기능장애(49%) 등이었다.
증상의 분포는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고분의 형태
(표 4)에 따라 어떤 증상을 나타내
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
다.

〈표 5〉의 이렇가지 증상 중 세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는 52명의
고분피해자는 外傷性 뇌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머
리의 외상은 특히 중요시해야 한다고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다. 52명 중 44
명은 머리에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었고, 나머지 8명은 자신들이 아
는 한 고분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
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전체 고
분피해자 1백35명 중 머리에 이상을
입었던 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명
은 외상성 뇌증후군을 보였고,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던 51명 가운데는 8
명만이 외상성 뇌증후군을 일으켰다.
이 사실은 머리의 외상이 복합적인 신
경 및 감각 이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
혀 주는 것이다.

※ 1백35명 중 52명(39%)이 증상의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

性的 장애의 정도

고분을 당할 때 받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식기외상은 생식기능과
상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고분에 뒤
따르는 일어난 수감상태가 계속되면
공주립과 영양결핍 때문에 고분피
해자들은 생식기능과 상기능의 장애
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시면위원회 소속 덴마크의료구
rup은 67년부터 71년 사이에 고분을 받
은 그리스인 17명에 대해 고분의 생식
과 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76~77년
에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남자
로써 2~47일전 고분을 당했다. 특
히 머리와 생식기를 부딪혔고, 전
기고분물고분 잠안제우기가 증명된
척에 대한 위협, 밤마다 물이 매달리
기 등의 고분을 받았다. 고분 뒤에는
5개월~6개월간 수감되었다.

이들에 대해선 고분방지 전과 후의
상기능에 대한 28개 문항을 조사했
다. 조사내용은 상유 망기 각치감시
정성교섭 등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

있고, 성호르본을 검사해 일반인과 비교했다. 성기능장애는 △성욕감퇴 △발기불능 △射精지연으로 구별했다.

조사결과 17명 모두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불임도 없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8명은 고분과 수감생활 뒤에 성기능이 감퇴했다고 보고했다. 이중 3명은 단순히 성행위의 빈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남자로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였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성기능장애가 있었고 성적 욕망이 감소되었으며, 2명은 발기불능의 상태였으나 이들 중 단 한 명만이 첫 검사에서 성기능장애가 밝혀졌다. 성호르본 검사에서는 17명 모두 정상 그리스인 남자와 같은 범위에 있었으며, 같은 나이의 덴마크남자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성기능 장애가 17명 중 5명이나 됐다는 그 높은 비율(29%)에 있다. 일반인의 성기능장애 비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킨제이보고」에 따르면 26/45세에서 3.5%가 성기능 장애를 겪

신진강진료소는 73년부터 77년까지 켈레이린이 2백3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이린이 및 가족과의 면담과 心性 검사를 받았다. 이들 중 78%가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졌고, 70%는 우울증을 보였으며, 78%가 강렬한 공포감을 나타냈다. 공포증은 사이렌소리, 계복심아의 자동차 엔진소리 등 특정 현 환경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었다. 식욕감퇴와 체중감소, 수면곤란, 오줌 끼기 등 퇴행적 행동, 학교성적 퇴락, 이질, 부모에 대한 의존성 등의 증상은 각각 50%씩 나타났다.

이같은 증상은 △나이가 어리고 △종교에 집착 시간이 길고 △가족과 사회와의 고립이 심하고 △부모의 수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백서코로 추방된 아르헨티나의 여류 28명에 대한 79년의 한 조사에서는 공동증상으로써 불면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밖에 식사습관 이상, 공격성향, 발달지체, 과도한 의존성,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불면증이나 식사습관 이상 등은 시가나 지남에 따라 좋아졌으나, 의존성과 공격성향은 오랫동안

고 있다고 한다. 77년 덴마크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성기능장애는 2.5%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교할 때 고분피해자들의 성기능장애 29%는 대단히 빈도가 높은 것으로, 집단수용소에서 풀려났던 남자들에게서 성기능장애가 발견되는 비율은 30/75%에 비유되는 것이다. 성욕의 감소는 시상하부질환이나 뇌하수체질환, 그리고 이상후뇌종후군을 보이는 뇌질환 환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분피해자들의 성기능장애는 고분만을 때의 버리의 의심이나 생식기 외상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호르본도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분 뒤나 수감시 심각한 체중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굶주림이나 영양결핍도 원인이 아닌 것으로 추측됐다. 따라서 고분피해자들의 성기능장애는 심리적 메카니즘과 시상하부손상이 의심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남아 있다.

이린이들에게 미친 충격

고분은 단지 고분받는 피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의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린이들은 4살 이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고, 조사 당시는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뒤였다.

국제사민위원회 덴마크의 그 그룹은 76년 소아과의사 아동심리학자 소아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간호원 등으로 구성된 이린이 특별위원회를 설립, 70년대 후반에 덴마크에 살고 있는 75명의 켈레이린이들을 조사했다. 이 어린이들의 조사 당시 나이는 1/21살로, 대개 부모가 식방된 뒤 가족과 재결합해서 2/6년이 지난 뒤였다.

이들 중 36%인 27명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소음에 민감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나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터뜨렸다. 35%에 해당하는 26명은 잠이 드는데 힘이 들었고, 잘 때 도 경관관 군인 살인 죽음 등의 악몽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중 많은 어린이는 용유병을 갖고 있었다. 17명(23%)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는 夜尿症을 보였고, 12명(16%)은 우울증이 있고 내성적이 되어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사귀어 나가기 어려워

가족, 특히 이린이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고분과 이와 관련된 이린이가 지닌 영향은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장과정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이민도 이미 수천명의 이린이가 부모가 실종되거나 처형되어서 집을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어린이들 중 일부는 고아원에 수용되거나 다른 가족의 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고, 이들과 생년월일이 불리진 체로 기록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 이들마저 뒤에는 실종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들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또는 동학교원에 체포되어 수감되는 예도 수없이 많다. 부모가 고분받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거나 부모의 눈앞에서 고분유 죄질 당하는 어린이도 있다. 이린이를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거나, 부모가 숨어버렸을 때 일자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린이는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보거나 부모가 수감돼 장기간 억류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정신적 긴장을 느끼고 심정파정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한 징

있다. 반면 13명(17%)은 행동에 공격성이 심했고, 9명은 식욕감퇴, 5명은 기억력 감퇴, 6명은 心性위장병, 4명은 빈비중세가 있었다. 이 어린이들은 친계집사 결과 대부분 정상소질을 보였다. 일부는 미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가 구급되어 있는 동안 불안과 불안정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심리적 긴장이나 식사내용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고문치료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고분유용증을 치료하는 곳은 전세계에 두 군데가 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고분피해자 재향센터와 83년에 문을 연 캐나다의 티몬트센터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주지사 「루디 퍼피저」의 기병에 버리, 메이요클리닉의 주지사위원회 위원장 「유진 매이베리」파시와 미네소타 대학 「로버트 스타인」학장이 공동의 명의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고분피해자의 수가 증상을 위한 독립된 치료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해에 내놓은 바 있다.

1982년 덴마크에 설립된 국제 고분피해자 재해센터는 현재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고분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의료전문가들에게 최신의 고분피해자 치료법을 훈련시킨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화보해야 한 첫째 과제는 고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별居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배우자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정신적 불안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고분피해자 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분을 시행하는 심문관들은 대개 흰색 가운을 입고 있고 피해자들한테 자신들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정당화시키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고분피해자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고통스러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고분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단언하다고 여기왔고 또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제 그는 잔학하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끼

적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도 고분피해자를 알아내기가 어렵지만, 고분의 표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의사들의 전문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고분피해자에 대한 보다 이상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압중보색이 계속되고 있다. 티몬토의 한 자원 봉사 의사는 고분피해자가운데는 몇 년 또는 몇십년 뒤에 심각한 정신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고분후유증 치료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위원회」 소속 「스토비」와 「나이팅게일」박사가 기념해 말 피엔 「신체와 정신의 파괴」는 이업적인 정부가 고분체계를 영속적시키는 데 어떻게 의료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고문에 참여하는 의사들
이 책의 저자들은 고문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기학적인 목적에 일종하는 법에 비한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법

제 1부, 기적으로 가득 찼고,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곳으로 비쳐게 된다. 디몬토센터에는 의사 50명과 자원 봉사자 20명이 항상 대기중이다. 환자를 시작할 지 첫 1년동안 2백2명의 고분피해자를 치료했다. 1년에 산중 10만달러는 유엔과 캐나다노동조합 및 개인들의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추가 의료비용 20만달러는 캐나다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코펜하겐센터에는 전임 의사와 치료사 26명이 일하고 있고, 매년 50만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비용은 모두 87년까지 덴마크 정부가 떠맡기로 되어 있다. 이 센터는 83년 가을부터 84년 가을까지 1백75명의 고분피해자를 치료했다. 이중 치료를 끝낸 67명의 남녀 고분피해자는 거의 모두 증상이 개선되거나 완치됐다고 이 센터의 의사인 「잉게 캠프 게네프케」가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밝힌 바 있다.

고문 치료의 어려움

티몬토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존」(31)이라는 고분피해자는 우간다에서

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때로는 자진해서, 때로는 본인 지시과 가족들에 대한 위협에 못지나 이 같은 일에 참여한다는 것. 참여방식은 △고분법은 사람들의 전강진단서나 고분을 받고 죽은 사람들의 부검소견을 허위로 작성해준다든가 △고분행위가 계속되도록 고분받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의료치료를 한다든가 △일면 고분자들에게 절단수술과 같은 의료기술을 훈련시킨다든가 △스스로 고분을 행하는가 한다.

소련에서 화중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의자들이 정상인처럼 심각한 정신이상 이 있는 사람으로 진단해 수용소 시설에 감금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단 반정부인사가 정신병동에 감금되고 나면 의자들은 엉뚱한 약물치료로 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다.

소련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정신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신병동에 수용되면 정신병환자들에 의한 폭력과 수용료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강제적인 정신병화 약물치료로 온몸이 부서지고 두통

캐나다에 입국할 당시 는 몸무게가 50kg에도 못미쳤다. 그는 부상치료와 정신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영양사들에게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는 자원봉사자에게서 수업을 배웠다. 「존」은 이 센터를 통해 진화가 성공으로 취업했다. 고분피해자가 직업을 갖는 것은 자존심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부여해주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 센터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티몬토센터에는 사회단체나 이민수속번호사 등을 통해 환자들의뢰받은 다. 그러나 고분피해자들은 일반의 국인으로 西歐국가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고분피해자들은 대개 과거의 고통스러운 체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며, 신체의 상처를 보고 그것이 고문의 표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의사들도 매우 드물다.

실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로, 84년 말 몬트리올 병원에 입원했던 아르리카의 한 여성은 병실 동안이나 고문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단순한 심장입과 히스테리 환자로 치료를 받았다. 인이가 다르고 문화

이 일어나며 체력이 점차 쇠약해진다 고 한다. 나찌정법을 다룬 뒤를베르크레판은 수백명의 의자들이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수용소의 로로들에게 무시무시한 실험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부로했다. 이 같은 폭로는 의사단체나 기타의 사회단체들은 고분과 부당민내우로 요약되는 실험에 의료전문가 가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 라는 선언서를 내놓게 했다.

예컨대 1949년 세계의시협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의 료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이미린 상황이래지도 의사는 환자 를 위한 치료나 예방목적 이 아니라 민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지식을 악용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

그로부터 26년 뒤 세계의시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가 고통을 수 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동정선언을 채택했다. 고문선에서 의료전문가들을 끌어내면 다고 해서 고문이 없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이 고문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면 지어도 고통을

수행하는 일은 그만큼 이리위치고, 정치제 통제에 수반으로 고문을 이용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기센 비난이 피 부어질 것이다. 고문에 참여하는 의 료진분자들은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의료단체나 국제의료단체는 의료진분자들에게 위 임된 치료라는 것은 신속한 윤리적인 무가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각국 정부 에 주지시키고, 헌법으로는 의료진 분자들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 해야 한다.

철레의학협회의 반고문활동

철레의학협회는 최근 몇년동안 의 사가 고문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고문 자체의 추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협회는 불법의류자 나 수감자들이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에 관심을 갖 고 있는 이타 국가의 의사단체들에게

10년 전 국제시민위원회는 한 보고 서를 통해 철레에서 73년 군사쿠데타 가 일어났 뒤, 철레의 의료계 지도자 들 중 몇 사람은 정치범에 대한 고문

이 아니라 고문명인에서 시행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고 문명인 수감자들을 양전하기도 했다. 고 문명인.

82년 중반 국제시민위원회와 협력 하는 의사들이 철레에 입국 수감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8명의 철 레인을 기진했다. 이들중 15명은 수 감중에 한 사를 만났고, 고문 전후 에 한차례씩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주 장했다. 「파블로 푸엔찰라다 제가스」 라는 수감자는 혐의가 높았기 때문에 고문을 받기 전에 의사로부터 다 이어 제(말뚝)이라는 전정제를 주사 받았 다고 말했다.

지금도 철레에서는 고문이 계속되 고 있다. 85년 8월 2일 한 판사가 경 찰관 14명이 반정부활동가 세명을 살 해하는 데 인부했다고 성명을 발표했 다. 반정부활동가 세사람의 시체는 85년 3월 질린 케로 시궁창에 버려져 있었고, 몸에는 고문흔적이 여력했다. 성명이 발표된 지 24시간 뒤 군사혁 명위 위원이며 지인책임자인 「멘도 자」 장군이 사임했다.

철레의학협회는 고문방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철레사회단체의

이 협회는 정부에게 고문을 종식시키 라고 촉구하고, 이 협회가 디 이상의 의 료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피난 처나 보호요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달 「곤잘레스」 박사는 철레 내 법원장에게 고문사태에 대한 증거자 료를 보내고, 고문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했다. 7개월 뒤 「곤잘레스」 박사와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트레조」 박사는 이 협회가 의사들의 고문침의를 방지 하기 위해 벌인 활동을 미 의회에서 중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 협회는 85년 3월 다음과 같은 상 황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를 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①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요구를 하거나 물리적 수단으로 환자가 누구인지 알 아볼 수 없도록 했을 때 ②환자의 눈 이 가리웠거나 두건을 끼워 얼굴을 가 렸을 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진료하 는 환자들 보지 못하도록 했을 때 ③ 재 3자의 입회시만 환자와 의사가 접 촉할 수 있을 때.

「트레조」 박사에 따르면 이들 지침 은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이다. 48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9천이명의 회원을 두고 있고, 이들 중 90% 정도가 철레에서 의료활동을 피고 있다. 73년 군이 권력을 장악하 자 모든 전문직종단체는 회장단을 선 출하는 권리를 잃었다. 그동안 철레 의학협회의 회장단도 군당국이 지명 했다. 81년 후반 군사정부는 이들 단 체가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해 회장단 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켰 다. 그 뒤 철레의학협회는 의료진분 가가 고문에 공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서를 채택했고, 정치범의 하대에 참여했다고 기록된 5명의 의사에 대 한 불과청분회를 열었다.

이 협회는 「카를로스 헤르난 케레 즈 카스트로」라는 한 군의관의 의사 자지를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페레 즈」가 82년 고문을 받은 「마리아 데 로스 엔젤레스 산후에자 루이즈」가 비밀구치소에서 풀리날 때 신체상태 가 양호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 문이다.

「페레즈」사건은 「산후에자」가 철레 의학협회의 윤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83년에 시작됐다. 그녀는 고 문받은 뒤 「페레즈」가 엉성하게 건강

다. 예를 들면 몇명의 군의관과 경찰 장 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라는 명령 을 받고 이들이 협회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 그들은 의 사로서 고문을 은폐하는데 참여 할 수 없다는 점을 군 당국에 알리는 내 이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 한 것이다.

의사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고문 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고문이 신체와 심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숙 단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문의 후유 증에 관한 연구와 고문의 장기적인 영 향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직까지는 결 유마단계에 있으나 하더라도, 최근의 증상이 무리감, 높은 불안감, 기억 손 상, 집중력 상실, 야몽 및 공포증 등 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알기도 실 명된 바 있다. 고문피해자에 대한 인 구결과를 출판해 널리 알리는 것은 고 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 및 더 나아 가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디 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고문을 방 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진단을 했다고 고소했다. 「산후에자」 는 비밀구치소에 5일간 수감되어 있 는 동안, 높은 가리운 채 구타당하고 담배불로 화상을 입었으며, 전기쇼크 고문 등을 당했다고 위원회에 말했 다.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 한 의 사 는 「산후에자」를 사망 1주일 뒤에 기 진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담배불 화상을 입은 흉터가 남아 있었으며, 키 에는 지료가 필요한 만큼 구타당한 상 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고문받지에 앞장서야

윤리위원회는 지금도 고발된 의사 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 진상 조사내용은 철레의학협회의 20인 위 원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공개 발표 할 유보하고 있다. 이 협회 회장인 「후안 루이스 곤잘레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고문을 은폐하는데 참여한 의 사는 30~4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

다. 이 심회는 불과청분회를 여는 것과 별도로 고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 다는 입장을 의사와 일반에게 주지시 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84년 11월



(물러난 직후의 김시훈씨)

넌 재판부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 대법원판사 12명이 심리하는 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

무고한 사람을 고문을 통해 살인범인으로 조작해 고등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아낸 金詩勳씨 사건은 이렇게 그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金詩勳. 중졸 학력에 폭력진과 4범. 흠이미니 밑에서 자라 시골살이 남도록 장가도 못들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사람. 그의 이름 석자는 이제 대법원 관례집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까지 실렸다. 그의 한과 눈물자국을 더듬어 보는 것은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을 통해 범인으로 만들어 과민시켜 버린 기막힌 사건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81년 6월 28일 오전 10시반경 全州 孝子洞 2가 670 비사벌자립원 부근 고추밭에서 동네에 사는 인쇄공 崔賢錫씨(당시 20세)가 끔찍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다. 발을 매다 쇠씨의 시체를 발견한 金孝順부인(43)의 신고를 받고 전주경찰서 邢柄權경위 表在權경사가 즉각 현장에 나가 김시와 실황조사를 했다.

시체의 다리는 피살자의 자전거고 무집근과 테니스화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얼굴목 다리도 고무집근과 메리야스, 편티조카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이중 피살자의 머리를 묶은 「백색 바당 콘색 줄무늬 티셔츠」는 피살자의 옷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유력한 증거물로 소중히 보관됐다. 全北大의내 부속병원 병리과장 崔鎬烈씨의 부검 결과 시체에서는 에리한 흉기로 찌른 자상이 38군데나 발견됐다. 사망후경시장은 24일 밤 12시. 사인은 失血 및 질식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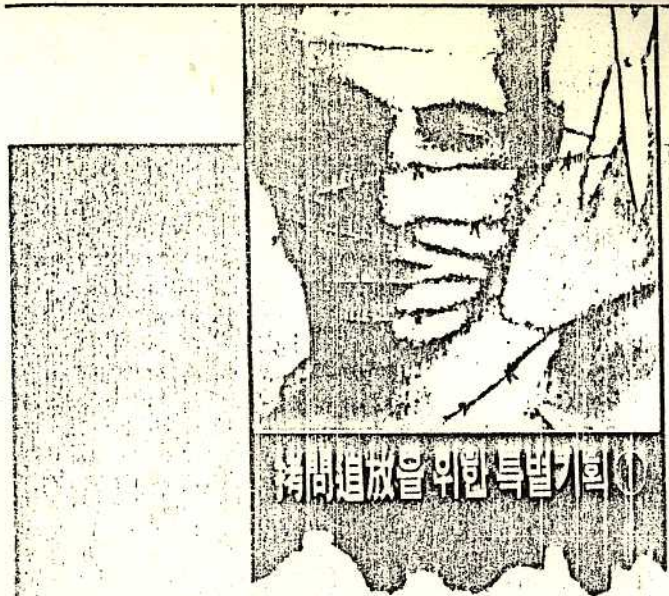
시체와 현장에 조사한 경찰은 범인이 단독범이 아니고 2인 이상이라는

사건의 발생

결론을 내렸다. 81년 7월 1일자 형법권경위의 수사보고서도 2인 이상의 범행으로 추정됨을 명백히 했으며 수사경찰에 비추어시도 당인한 결론이었다.

전주경찰서는 피살자 시체가 발견된 바로 다음날 비사벌자립원에 鄭正源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분부를 설치했다. 수사분부는 현장을 중심으로 피살자의 행적, 동일수범진과자, 원한관계, 목격자, 부근 우범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초기에 피살자인 최현식씨와 원한관계를 갖고 있는 「J모씨」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탐문수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분부

무고한 사람을 고문으로 살인범으로 조작해 고등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아낸 金詩勳씨사건은 엉뚱한 데서 진범이 검거됨으로써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拷問을 위한 특별계획

拷問과 誤判이 만든 殺人犯

黃 鎬 澤

(東亞日報社會部記者)

大檢에 올라온 긴급보고

82년 8월 초순. 대검찰청에 全州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光州고법에서 살인혐의로 정의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사건의 진범이 마로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요지의 보고였다. 예사일이 아니었다.

전주지검의 보고를 받은 대검은 즉시 대법원에 이같은 사정을 알렸다. 진범김기를 통보하지 않아 대법원이 무고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버리고 유죄를 확정시킨 경우 검찰은 물론 최고심인 대법원의 명에 처벌받은 상치를 임할 우리가 있었던 것이다. 재심이라는 구제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심이 하급심의 명백한 오관을 추인하달수없는 내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의 화급한 통보를 받은 대법원은 화급심의 오판을 바로잡는 법적 절차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술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관례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 사건은 당인히 4명의 대법원판사가 심리하

를 차린 지 10일만인 7월 9일 살해 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진주대학 진흥공사장에서 이 공사장 총무崔모 씨(43)로부터 키가 비쩍 마른 이 야기를 들었다. 확인사건이 나뉠 날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 공사장을 떠난 김시훈이라는 인부가 성격이 포악한 전과자라는 것이었다.

「시훈이는 평소 일을 잘 하지 않는 데다 술을 마시고 인부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렸습니다. 확인사건이 난 바로 그날 해고당해 공사장을 떠났습니다. 하얀 바탕에 글썽 줄무늬가 쳐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3시경 마지막

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정찰은 모든 수사를 중단한 채 김시훈씨를 유리한 용의자로 단정했다. 정찰은 김씨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공사장 인부와 식당 종업원 등을 불러 진술을 들어나갔다. 정점 힘의 가졌어졌다.

조사 결과 손씨가 6월 20일 밤 10시경 노무자 숙소에서 화물차를 하차시키다가 벌어진 동료 인부에게 쇠장도리를 던져 얼굴리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밝혀냈다. 또 6월 18일 저녁 6시

경에 이 공사장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전과자다. 다른 김부와 똑같은 내수를 받을 수 있다. 진주연성이 이리키고 소리를 치며 시범기에 10여 차례 막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이 22일에도 인부 15명 가량이 저녁을 먹고 있던 같은 식당에서, 소장이 놀이 일을 시켜 주지 않는다. 소장 나와리. 죽여 버리겠다고 고향을 치며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또 19일 밤 9시 반경에는 노무자 숙소에서 잠자던 동료 인부들에게 「이 X같은 놈들 잘 곳도 마린해 놓지 않았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도 들었다. 정찰은 손씨의 신원을 확인, 인고지로 형사내를 급히 내러 보냈다.

손씨는 6월 16일 淸州에서 전주로 내리와의 공사장에 취임한 인부였다. 6월 24일 해고당한 김씨는 오전 11시 반경 총무와 노임을 청산, 노임 2만 3천 1백원에서 쇠비늘 3천 7백원을 받아 귀고 공사장을 떠나 진주역으로 갔다. 오후 2시경 忠南道 치위까지 가는 특급열차 표를 끊었으나 신탄전에서 내렸다.

미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김씨를 신고 청주시내로 들어와 청주경찰서 앞 국제이관으로 들어갔다. 이어 관 2층 객실에 투숙한 형사들은 김씨를 묶은 채로 이불장에 넣고 문을 잠근 후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트」를 봤다. 2, 3차례 문을 다고 김씨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튿날인 13일 아침 9시경 형사들은 김씨에게 「6월 24일 청주에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재고를 물었다. 형사들은 그때까지 김씨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 포승을 풀고 김씨를 기동대 미니미스에 대운 형사들은 김씨가 24일 밤 11시 무렵부터 6.25특집극을 보았다는 청주시 남부동 중극음식점 대우반점으로 갔다. 김씨가 주인에게 「제가 24일날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밑썸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주인 내외가 고개를 끄덕이고 형사들은 김씨를 밀쳐냈다. 후일 대한민척 전상조사단이 대우반점주인을 만났을 때 「81년 6월 중순경 밤 10시가 지나 김씨가 들어와 자정까지 6.25특집극을 보고 분담기 적전에 니갔다. 그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신제로 「동아일보」 82년 6월 24일자 12면 텔레비전 프로에는 24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MBC TV에서 6.25특집극 「불타는 나리」를 방영한 것으로 돼 있다. 이날 나리 방송국에 서는 6.25특집극을 방영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손씨를 수사하면서 방송국에 조회하거나 82년도 6월분 신원조사도 뒤져본 흔적이 수사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13일 아침 이튿날 나와 형적수사를 한 형사들은 정오경 淸州를 떠나 서울로 차에 옮겨 태우고 전주로 갔다. 형사들은 그때까지 손씨에게 언쟁하는 이유를 알려 주지 않았다. 김씨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으며 반항을 하자 형사들은 김씨의 시진을 보여 주며 「이게 내 인물이지. 야무이 유도없이 너를 체포하겠다. 다 이유가 있어. 수사비를 2배만 늘려 헛돈으로 쓰며 수사하는 게 이니야」라고 말했다.
오후 4시경 전주에 도착해 진북 2동과 송소 속직선로 관리들이 갔다. 상급자인 듯한 경찰관이 청주에 다니온 형사에게 「이렇게 됐어」라고 문자

오후 5시 반경 신탄전에서 미스를 타고 청주로 와 오후 9시 반경 친구 3명과 막걸리를 마셨다. 10시 반경에는 친구가 동인 1박스 사는 데 따라 갔다가 그 뒤부터 동산물구판장 앞 중국집에서 자정까지 텔레비전 「6.25특집극」을 보았다. 전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24일 밤 11시 반경에 청주시내 중극집에서 6.25특집극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김씨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 후 김씨는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대 뒷산 벌목장에 취임해 나무베는 일을 했다.

영문도 모르고 강제연행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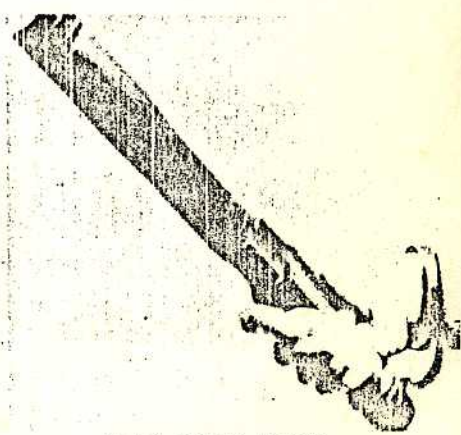
김씨는 7월 12일 오후 5시경 이별목장에서 진주경찰서 형사내에 의해 연행됐다. 형사들은 벌목장에서 일을 하는 김씨에게 다가와 「김시훈이가 누구냐」고 물었다. 김씨가 「예, 제가 김시훈입니다」고 대답을 하자마자 형사 3명이 단리처럼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었다. 김씨가 몸을 뒤흔치며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로 내리오니 형사기동대 미니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성립됩니다」라고 말했다. 장급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도 매달이는 바아지」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살아난 게 신기할 정도의 고문

이날 오후 5시경부터 14일 오후 4시경까지 진북 2동 피호소 2층 속직실에서 김씨는 「살아난 것이 신기하게 여기기 전 말한 김씨의 표현」의 후속 고문을 받았다.
형사들은 손씨의 옷을 벗겨 밧기기로 철제 의자에 앉혔다. 양 손은 의자에 걸이 수갑을 채우고 양 발은 포승으로 의자 다리에 묶었다. 그 후 「최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24일의 행적은 뭐라고 말리는 다림이」라며 곧바로 두마로 대지 않겠어」라며 곧바로 실기를 10여 차례 때렸다. 성기가 부이오르자 「홍분한다」고 야유를 하고 곧바로 머리도 미구 때렸다.
잠시 후 그들은 김씨의 자에 있던 체를 2평 넓이의 복유당으로 옮기었다. 형사들은 김씨의 발 다리에 수갑을 다시 채운 뒤 수갑 위를 수건으로 덮고 포승으로 또 묶었다. 그사이 적경 4cm 길이 2m 가량의 쥘봉

을 끼워 철재의 자 2개 사이에 걸쳐 놓았다. 기둥도 매달린 짐승의 얼굴에 수건을 낫고 물을 뿌린 후 비누를 과 과수가 무릎을 들이부었다. 김씨가 스키드는 물을 삼키자 형사들은 수건을 위안에 쑤셔넣고 코와 눈에 고수가 루를 넣은 뒤 물을 계속 흘려넣었다. 기절했다 깨어나면 같은 방법으로 다 시 시작했다. 기절한 것이 모두 4차례. 등과 엉덩이에 전기봉으로 진류를 방전시키기도 했고 새벽 6시까지 잠을 깨우지 않았다. 형사 30여명이 3교대를 했으나 가장 악질적으로 고문을 한 사람은 「오게장」 「바반장」 「최형사」였다.

형사들은 고문을 하면서 흰바탕에 끈색 줄무늬 티셔츠가 네 옷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오후 6시 정 고문이 중단되고 2시간 가량 쉬고 나니 그들은 오른손을 풀어 죽결심판 청구서 용지에 손도장을 강제로 찍었다. 진주대학 신총공사장 식당과 노무자 숙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즉결심판청구서 용지에 적혀 있었다. 이날 오전 9시경 김씨는 진주지법 주검밧에서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다시 진북 2동 파출소 속죄실에



〈고문에 사용되는 전기봉〉

돌아와 의자에 묶였다. 형사들이 가끔 들락거리며 주먹질을 했다. 이어 밤 9시경부터 새벽 6시까지 목욕탕에서 9시간 동안 진날 밤과 같은 고문을 받았다. 여러 차례 기절했다. 15일 새벽 6시경 고문은 중단됐으나 줄면 앞에서 있던 형사가 공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15일 아침 10시경 그들은 지씨를 노니승용차에 태우고 「제2공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비사발자림원 식당창고에 들어간 후 김씨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고풍레시를 비치며 깨워 정신을 차리게 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눈앞에 흰장판이 나타났다. 흰장판에는 죽은 시체를 끼은 킬리사진 3장이 붙어 있었다. 시체의 정면 얼굴과 손발이 묶인 상태의 사진들은 침혹하게 살해된 피살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무슨 사진 같이 보이지」
「내가 죽인 사람도 모르겠다」
김씨는 형사들의 추궁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

「부르는 대로 적어라」

형사들은 녹음기를 들이대며 「내가 최형사를 죽였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형사들은 잠깐이라도 김씨가 고개를 돌리면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사진을 찍기로 보라고 으름장질렀다.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에 의자 밑 그릇에서 무릎을 태우는 지베스꺼운 인기가 올라왔다. 숨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졌다.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형사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종하고 때 때운 「스와니강」을 불렀다.

「미나민 저곳 스와니강물 그리워라」
「날 사랑하는 부모형제 이 몸을 기다라」
이 세상에 정처없는 나그네의 길 / 그리워라 나 살던 곳 멀고 먼 옛 고향 / 정처도 없이 해매는 이 내 신세 / 인제나 나의 옛 고향 찾아가 볼까……」

「스와니강」이 끝났는데도 쉬지 말고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자로 자기의 심정으로 「유정천리」 「가슴아프게」 등 유행가 7곡 정도를 불렀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마다가 없었다면 /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 / 해 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인락을 /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박반장은 다시 녹음기를 코앞에 들이대며 「최형사아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으름장질렀다. 정신이 몽롱해지자 스스로 살인자라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내가 죽었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했다. 16일 아침 11시경 감에서 깨어났다. 형사들은 담요로 김씨의 몸을 말아 창고밖에 내놓았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쏟아져 내리니 막이 담요를 적셨다. 목이 마르다. 김씨가 물을 찾자 형사들은 주

몸부림을 치자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윽한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며 달랬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무슨 죄를 졌는가요. 죄를 알려줘야 「했다」 「안 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를 체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경찰국장이 아니라 형사였다.

형사들은 김씨를 내가 24일 오후 2시에 진주역에서 열차를 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열차시간표에 오전 11시와 오후 5시 사이에는 열차가 없다. 사실대로 말해야 살 수 있다」고 으름장질렀다. 형사들은 인행 이후 그때까지 물 한 모금 밥 한 끼 주지 않았다.

형사들은 김씨가 오후 2시에 특급 열차를 탔다는 진술을 바꾸지 않자 진북 2동 파출소에서 가져온 흰재의 차에 지전기 튜브 3개를 걸쳐 김씨의 몸을 묶었다. 김씨는 호수관란으로 고통을 겪다 몇 시간 후 실신했다. 한 형사가 잠든 김씨의 눈꺼풀을 까

진자 물을 머리에 몇 방울씩 부으며 「장물 하나만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16일 정오 무렵에는 병원에 가지 주사 2대를 맞고 돌아왔다. 주사를 맞고 돌아온 뒤로 이상하게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도 흐릿해졌다. 박반장이 시늉지와 볼펜을 주며 「부르는 대로 적어라. 너 좋고 나 좋은 일이다」라며 자습시를 쓰도록 강요했다. 지씨가 「못 쓰겠어요」라고 말하자 형사 5명이 달려들어 양동이 속에 머리를 치넣고 머리와 등을 짓밟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밟을 때는 이미 밤이 어두웠다. 지씨는 지로 자기인 심정으로 그들이 갖다 준 볼펜으로 배지 위에 박반장이 붙여 주는 내용을 적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으나 사립을 죽였다고 쓴 것 같았다. 손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머리카락을 찢는다. 기형에 죽게 된 데니 몸이 나 성해서 죽어라」고 말해 「뒤대로 세라」는 기봉으로 손을 내구었다. 자습시를 받아는 형사들은 자습시를 가운데 놓고 서로 불러 주고 받이 적으며 피의자 신분조지를 만들었다. 형사들이 다시 김씨의 오른손을 붙이

인주를 문헌 뒤 지장을 찍었다. 이제 다 끝났다. 몸조리나 잘 해라.

17일 새벽 형사들은 김씨를 형사기내 차에 싣고 전주 시내 모정형의과 부인과 정간이에 금이 갔으니 그냥 풀수없이 생긴다는 말을 했다. 이럴지나미 눈물이 주르르 흘렀

경찰, 유치장 관계서류까지 조직 김씨는 7월21일 구속영장이 발부

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같은 김씨가 전주지법에서 받은 구 5일의 형을 집행한 사실이 없는대 유치장에 비쳐된 구속인명부, 간부인명부 등에 김씨가 14일 오후 20분 입감해서 구류 만기일인 18일 오후 6시 석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놓았다. 14일부터 13일까지는 해 놓았다. 14일부터 13일까지는 해 놓았다. 14일부터 13일까지는 해 놓았다.

시의 끝까지 남았어있던 것은 「自」로 작성한 자술서가 아니라는 혼적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자술서를 쓴 직후에 작성된 제 2차 자술서에 김씨는 범행사실을 시인 「이민만 권대한 처벌을 해주신 민안으로는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갚겠습니다」는 참회의 말까지 한 것으로 지혀 있다.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공사감 일부 등도 김씨가 문제의 줄무늬 서초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조 가 경찰수사 기록에 첨부해 있다. 7월18일에는 현장김증이 있었다. 씨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재했고 이때 찍은 현장진중사진도 경 기록에 붙어 있다. 김씨는 이후 7 30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김씨 집판에서 △7월30일 △8월11일 △8월12일 작성한 3차례의 피의자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살인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외조카(이) 공사장 부감독 일부 수모씨 일부 뭇모씨 등 김씨가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김판에서 진술했으며, 경비 박영권씨는 6월24일 밤 10시만경

있고 있었다고 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의 공문서 조작은 대한법률진흥소사단이 밝히냈다.

김씨의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金詩勳씨 제1차 진술조서를 7월15일 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 김도선경장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제1차진술조서에는 김씨가 6월24일 오후 2시에 전주역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조치원에 내려 청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김씨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티안바탕에 끈색 줄무늬 티셔츠 조각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전주대학 신축공사장 총무의 진술이 나온다. 또 쌍용종합건설 소속 전주 대학신축공사장 경비원 朴永權씨(31)도 7월21일 전주경찰서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6월24일 밤 9시만에서 10시 사이에 순찰을 돌던 중 노무자 숙소에서 자고 있는 김시훈을 보았노라는 진술을 한다.

경찰수사기록에는 김씨가 고문에 못이겨 16일 작성한 자술서도 첨부돼 있다. 24일 밤 11시경 숙소에서 자다 일어나 빔차로 청주를 가기 위해 전주

평소 「두끼비」라고 불리는 김씨가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김판에서 상치 난 오른쪽 다리를 보여 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으나 「병인들은 모두 그렇게 범명한다」는 식의 반응뿐이었으며 결국 8월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자 참고인진술의 증거보전 절차까지 밟는 등 완벽하게 공소유지전략을 수행해나갔다.

경찰지시로 참고인도 거짓증언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金奎福부장판사)는 10월7일 첫 공판을 개정한 이래 판결선고 전까지 모두 5차례의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살인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재판장에 대리와 판부의 성치를 보이 주며 혹독한 고문을 받아 경찰에서는 허위진술을 했노라고 주장했다.

11월4일의 3차 공판에서 공사장 김비인 박영권씨는 경찰 및 김판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6월24일 밤 10시만경 순찰을 돌던 중 노무자 숙소에서 잠자던 「두끼비」 김시훈씨를 보았

역으로 가던 중 피사범처럼 앞고개길에서 자진기를 타고 오던 허형석씨와 부딪쳤습니다. 상대방이 자진기를 비리고 유실을 해 지도도에 힘에 부쳐 가방에서 칼을 꺼내 찔렀습니다. 칼로 목과 배를 수차례 찌르고 후시 살아남지도 몰라 자진기 고무줄로 끼를 묶고 제 T셔츠를 찢어 목에 밀어넣었습니다. 그 뒤 골목길에서 버를 피하며 새벽까지 기다리다 아침 6시경 전주역에도 차, 서울행 5시 50분열차를 탔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경향중에 지저른 것이니 관대히 한번만 용서하여 주신다면 개과천신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81년 7월16일 김시훈

지장이 컸어 있는 이 자술서의 글씨는 김씨의 평소 필자과 비교해 볼때 날림으로 쓴 듯한 흔적이 역력하다. 맞춤법도 여러군데 틀리었다. 김씨가 나중에 재판관 면담 때 1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필체는 또박 또박 쓴 글씨였다. 탄원서의 글씨는 중졸의 하력인데도 글씨가 마르고 맞춤법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 김씨는 후일 자

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증언선서까지 했다. 그러나 3차 공판과 4차 공판(11월25일) 사이에 경찰수사에 의혹을 갖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전주지법에 접수됐다. 전주대학 신축공사장 경비원 박영권씨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거짓진술과 거짓증언을 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서를 써 범인으로 보낸 것이다.

「오랜 망심과 두려움 끝에 이 글을 씀을 관사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제 양심상 이대로는 도저히 앞날을 살아갈 수 없이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6월24일 현장진중사진도 제 1차 진술조서에 붙여진 사진이 사실이지 않거나 일부 수모씨 일부 뭇모씨 등 김씨가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김판에서 진술했으며, 경비 박영권씨는 6월24일 밤 10시만경

있고 있었다고 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의 공문서 조작은 대한법률진흥소사단이 밝히냈다. 김씨의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金詩勳씨 제1차 진술조서를 7월15일 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 김도선경장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제1차진술조서에는 김씨가 6월24일 오후 2시에 전주역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조치원에 내려 청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김씨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티안바탕에 끈색 줄무늬 티셔츠 조각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전주대학 신축공사장 총무의 진술이 나온다. 또 쌍용종합건설 소속 전주 대학신축공사장 경비원 朴永權씨(31)도 7월21일 전주경찰서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6월24일 밤 9시만에서 10시 사이에 순찰을 돌던 중 노무자 숙소에서 자고 있는 김시훈을 보았노라는 진술을 한다.

나서 불안한 나머지 형사들과 상의
 했더니 「거정 말고 경찰에서 진술
 한 대로 검사 앞에서 말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날도 경찰서에서 들르라고 해서 형
 사 한 분과 같이 검찰청에 가 진술
 을 했습니다. 검사님 앞에서 도 사
 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지내던 중 다시 지난 11월
 4일 법정에서 출두했습니다. 이때에
 도 형사를 만나 「불안하고 겁이 나
 시 도저히 증인을 못하겠다」고 하
 니 「이제 와서 빈복을 하거나 위증
 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고 말해 법정에서도 사실을 말씀드
 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
 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밝히고 평
 생을 멋있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시
 신으로 판사님께 자백서를 올립니
 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남을 속이
 고 사는 일이 이렇게 괴롭고 무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과오
 를 뒤우치며 이 글을 드립니다. 판
 사님의 하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영
 풍종합진실 진주대학 현장 경비인
 朴永權 올림」

이 자백서에는 인력처 진화번호까
 지 기밀이 있었다.

1심 「名판사」, 무죄를 판결

11월 25일와 4차 공판에서 김규복
 부장판사는 김시훈피고인에게 다각도
 로 진문을 던졌다.
 「인제 기거했다.
 7월 12일 청주에서 작업 중 불참
 했다」
 「법복장에서 검거된 이후 20일 구
 속명장이 빈부될 때까지 무엇을 했
 나.

「체포되어 구금돼 있다 14일 즉길
 심판을 받고 구류 5일을 살고 계속
 구금돼 있었다」
 「부순 죄명으로 즉결심판을 받았
 나.
 6월 21일 진주대학 신축공사장 시
 당에서 방을 깨 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해서 즉
 심을 받았다」
 「자술시를 쓴 것이 있는데 생각나
 는대로 썼다.
 「진주경찰서 박판장이 부르는대로
 썼으며 그대로 쓰지 않으면 이루어 말

할 수 없이 고분하고 배웠다」
 「과도를 가지고 다니던 것이냐.
 「과도를 못한 것이다」
 이같은 재판장의 신문이 끝나고 김
 사가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사도 무
 죄취지의 유리한 변론을 했고 김씨는
 「진법을 잡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의 최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진주지법 1부
 김사는 뒤늦게 경비원 박영권씨의 자
 백서가 재판부에 유송된 것을 알고 12
 월 3일 변론재개신청을 내 증인 5명
 을 더 신청했다.

김규복부장판사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12월 16일 다시 공판을 열겠
 다고 결정했다. 재판청에게 지백서를
 보냈던 박영권씨는 12월 5일 김판청
 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했
 다. 박씨는 이 진술조서에서 재판장
 에게 보낸 자백서의 내용을 빈복하고
 「법정에서 피고인 김시훈이 눈을 부
 라리고 증인이 끝난 후 김시훈의 누나
 가 나를 다방으로 데리고 가 위협을
 해 자백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했
 다.
 박씨는 다시 순창도중 순씨를 보았

다고 당초의 거짓 증인으로 되돌아가
 다. 그리고 「판사에게 보면 자백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법정에서의 증
 인이 사실이었다」는 자술서까지 쓰고
 지장을 찍었다. 12월 16일 재개된 공
 판에서 김규복부장판사는 김시훈피고
 인을 직접 신문하며 의문점을 캐물었
 다.
 「진주를 떠난 24일을 어떻게 기억
 하냐.
 「역전에 「축하군단」이라고 쓰여진
 천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날 그 시
 간에 분명히 열차가 있어 타고 갔
 나」
 「21일의 진주지방 날씨를 어떻게
 짐지지방 날씨를 어떻게 알았나.
 「김주에서는 날씨가 좋았으나 청주
 에 오니 흐렸다」
 「경찰청기에 피문은 바지가 있는
 데...
 「내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전
 히 모르는 사실이다. 세탁한 옷도
 아니다」
 다음으로 경비원 박영권씨에 대한
 김시훈문이 있었다. 박씨는 「법원에
 허위자백서는 보낸 것은 김시훈씨가
 유송하고 눈을 부라린 데다 김시훈씨

의 누나가 다방에서 김시훈이 들이
 나. 사람이 그럴 수 있는냐」고 위협했
 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씨는 배석 순찰사판사가 「피고인이
 잠잘 때 무슨 옷을 입고 자던가」고 묻
 자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박씨의 증언 뒤에 신축공사장 인부
 2명이 김씨가 졸부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집
 요한 공소유지 전략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81년 12월 30
 일의 이 사건 선고공판은 진주지법
 1부 이 해의 마지막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
 학신축공사장에서 화부를 치다 인부
 에게 죄장도리를 던져 상해를 입힌 부
 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
 다.
 다음은 1심 부회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지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실황조사서 등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범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 기타 이 법정에서 진술인들
 의 진술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공복마지에
 묻은 혈흔이 A B형이고 피고인은
 A형, 피살자는 A B형이라고 하디
 라도 바지 혈흔이 피살자의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
 김시훈씨는 사망된 뒤 1심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를 「명판사」라고 일컫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고등법원
 의 판결에 대해서는 심리 지체도 불
 성실했다」고 비난했다.

김규복부장판사는 9월 9일 서울
 민사지법부장판사 지음 물러나외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대문 법원청사 앞 배
 재빌딩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규복 변호사는 「내 일생에 가장 기억
 에 남는 판결이라고 믿는다. 다소 장
 황하다라도 당시 부회판결을 내렸던
 배경을 소개해 본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형사상
 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
 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사 기록은
 피고인이 범행을 기백한 것으로 돼
 있었죠. 더우기 자판로 범행내용을
 쓰고 지항까지 끼은 자술서가 있었
 으니까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다음으로 경비원 박영권씨에 대한
 김시훈문이 있었다. 박씨는 「법원에
 허위자백서는 보낸 것은 김시훈씨가
 유송하고 눈을 부라린 데다 김시훈씨

다음으로 1심 부회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지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실황조사서 등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범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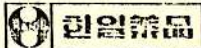
감기에 유행이 트벤 씨보셨습니까?

- ★목감기
- ★몸살감기
- ★기침감기
- ★콧물감기

하얀 김철의 종합감기약

이이트벤

표준소매가격 : 10김철 2,000원



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처난 손을 들이 보이며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요. 상처는 유안으로도 삼피볼 수 있었을 겁니다. 피고인의 어울하다는 호소가 진실이라는 느낌을 먼저 버릴 수 있었어요. 신축공사장 김비원이 살인사건이 난날 밤 10시만경 김씨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자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은 말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하반중에 남이 입고 자는 티셔츠의 부리와 새관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보통의 자정후부터는 잠자는 때 일찍 잠 넘어의 와이셔츠 색깔도 미칠 지나면 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피고인은 性行이 나쁜 전과자였을 겁니다. 진범일 가능성도 있었지

요. 그러나 열에 하나라도 진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金永奎, 李胤承 두 배서관사와 합의해서 부서관질을 내렸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金永奎씨는 '고등법원에서 1심 부서관질을 뒤엎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정도였으니 수사기록은 잘 짜여져 있었던 것'이라며 실소했다.

『법판결』 뒤편의 2심판결

김지훈 피고인은 살인혐의에 대한 부서관질에도 불구하고 폭력부문에 징역 3년을 내린 것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김철도 당연히 항소했다. 기소검사는 타이프용지 13매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판결의 '과

오를 남남이 통박하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최고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많은 죄과를 통해 체득한 요령을 심문 발휘해 죄후까지 기정을 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태도는 국가기관 특히 신성한 사법부에서 우롱하는 것입니다. 1심판결이 '정찰의 지시에 따랐다' '경찰의 장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만 마디 때문에 임의심과 재판성이 충분한 증거를 부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단발마작인 불공평에 현혹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김사의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된 뒤 김지훈씨도 光州교도소에서 항

소이유서를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의 항소이유서는 투박한 목소리로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실성이 짙게 배어 있다.

● 종합하용선 재판장님. 피고인은 3대독자로 이력 때 아버지들이 의고 휴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개과천신하여 착실히 노동에 종사하던 중 79년 6월 대청댐 현대건설 작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81년 1월까지 청주 남공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사님의 공소장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니다. 공소장은 「작업도 하지 않고 다른 일부들과 싸우만 해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으니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비관한 나머지 타주 4명을 마

시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청댐 공사 때 다친 다리의 후유증이 도져 작업을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노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임에서 식대를 까고 3천7백원을 받았읍니다. 「타주 4명을 마시고 술에 취해 전주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싸우다 칼로 찔렀다」는 공소사실은 납득할 수 없읍니다. 피고인이 타주를 사 마셨으면 3천7백원이 다 없어졌을 텐데 무슨 돈으로 기차를 탔니까. 김사님의 항소이유서에는 6월 24일 밤 비가 많이 왔다고 돼 있는데 정신이상자도 아닌 피고인이 비를 맞고 밤 11시에 기차를 왜 가나요. 잠을 자고 그 이튿날 가지요. 11시에 살인하고 12시 통급사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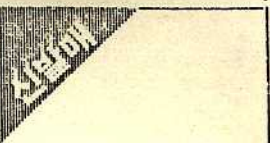
걸리미 8km 떨어진 전주역까지 1시간만에 갈 수 있나요. 공소장에 적힌 폭력부동도 사실이 되질 않읍니다. 피고인이 임부와 화투를 치던 중 나이 이력 오씨가 빈발을 해서 나이 이력 농하고 화투 못치겠다며 빙자를 집어들어 비에 던졌을 뿐입니다. 오씨가 찰과상을 입은 마도 없고 그 후 오씨는 「형님 미안하다」고 했고 나도 사과하고 나서 빙봉도둑 화투를 쳤읍니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같은 일까지 고집의 3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합니다. 어미님은 내년에 한집인데 제가 갑속에 잔해 개개가 이립습니다. 원래한 지므로 다시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미님께 효도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탄



● 李胤承 長篇小說 『關金運絡船』

규탄 / 고발 / 증인의 문화
한기희 장편의 다과분해
과정을 통해 민중의 숙명적
해방 이후 10년간의 의미론
치시하 규방 /
심·하각권 3, 200원

기린인 715-9106
716-9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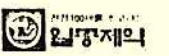


위·십이지장궤양에 1개월 단기요법

- 1일1~2회 간편한 복용
- 1주일 증상 소실
- 1개월 단기간 치료



11.5 조매가 60원 49,800원
20원 16,600원



원합니다.
광주교범 형사 1부(재판장 K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심리하고 82년 5월 20일 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부인한 자술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자술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리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자술서가 고무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호 외에 자술사의 임의성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무죄를 부인한 임터리 국선번호

김씨는 2심판결에 불복, 곧바로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를 82년 7월 5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은 임터리 키보이에 이를만큼 방대하다.

이 기록을 검토해나 가다 보면 어이 없는 기록이 한 가지 나온다. 국선번호인의 상고이유서가 그것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피고인도 완강하게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판에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고이유서를 내고 있다.

「피해자의 체격이 크고 세서 피고인이 맞아 도저히 대결할 수 없다고 제정난 나머지 과도를 들고 가 해를 했음이 틀림없는 데도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무거운 부당함이다」
이렇게 불성실한 변론은 차라리 없

부부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라면에 국수를 공짜로 줘서 끓여 줬으니 노인 부부를 불리 조사해 봐도 알 수 있읍니다. 전주 익전에 도착하니 「祝하군단 광고 증임」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고 육군소위들이 집결하고 있었읍니다. 전북대학이나 전주대학 학군단에 조치해 봐 주십시오」

진범 검거로 풀려나

김씨는 이어 첫인사건이 난 시간애 청주중앙우시점에서 6·25 특집극 「물타는 다리」의 줄거리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김씨의 상고이유서는 완벽 현상부재증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 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

한 참고인 1명도 불러 보지 않았다. 김씨 혼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14개월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을 때 82년 7월 20일 밤 11시경 8北益山郡 八峰面 石旺里 이희성씨(53) 집에 강도가 들어 현금 33만원을 털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石旺里 일대의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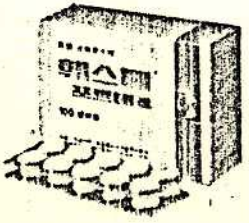
사물 판매에 이 마을 李鍾岩씨(22)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강도사건을 조사하다 이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년 전 전주시 효자동 비사벌자립원 앞 살인사건까지 자백을 받았다. 이씨는 전주에서의 살인범행 후 1년이 동안 김씨의 말 원두막 지키는 일 등을 하며 숨어 지내다 다시 강도짓을

지정리 불찰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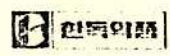
이씨가 자백한 전주 비사벌자립원 앞 살인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시 추정한 대로 다수의 범인이 지지군 범의 있다. 權三國(18) 吳宗坤(17) 李鍾岩 오경옥 강신태씨 등 5명이 용의이 궁해 지정리 살인으로 남남히 밝혀졌다. 이중 권군과 오군은 다른 강도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群山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이울현 살인범의 누명은 범사 검사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씨를 리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벗겨졌다.
내법원 전원합의체는 82년 9월 14일 대법원판시 13명 전원에게 참가한 가운데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

더욱 강력해진 소화제 웨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웨스탈 포르테 경
WES-TAL FORTE



님을 삼고했던 고법판결을 깨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권유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자필로 쓰고 손도장까지 찍은 자술서라도 그 자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야만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판사들은 이 새로운 판례를 놓고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10대 3으로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적하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他述로 강요되던 自述를 만능 수사방식에 종말을 알리는 판적이었다. 自述求實 "형사소송법인습"은 다분히 비분강개조로 이렇게 쓰고 있다.

"자필전술서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 1심은 부죄, 2심은 정의 15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자필전술서의 희생자가 김지훈씨 한 사람뿐이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 만약 진범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대법원의 재판관과는 이미했을까?"

대법원 판결과 함께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김씨는 9월 14일 밤 광주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교도소 문밖에 서는 갑작스런 사망진정으로 미치던

락이 넘지 않아 친지나 가족은 한사람도 미중나오지 않았고 신문사 취재차 인원이 몇 대 시 있었다.

회복 구석에는 바로 그를 약탈하게 고문했던 형사들이 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파면과 형사 처벌이라는 2중의 응징이 눈앞에 다가오자 이렇듯 개는 썩은 입을 막고 함의 서를 받아 처벌을 가리게 해보려는 의도에서 김씨를 만나려는 것이었다.

육신을 짓이기는 고통으로 잡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의 서방을 기다리는 형사들은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초조한 듯 인신 담배를 피워댔다. 교도소 문을 나선 김씨는 형사들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동아일보" 취재차에 탔다. 그는 취재차를 뒤쫓아오는 형사들의 승용차를 가끔 뒤돌아보며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언어들을 토해놓기 시작했다.

"9월 11일 한 교도관이 '동아일보'를 들고 와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줬어요. 부죄로 석방된다는 기대를 가졌으나 이렇게 빨리 석방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갖은 고문을 당해 찬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때는 인생을 포기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83년 6월 2일 광주교법에 제항소심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살인부분은 무죄가 확정되고 신중공판장에서 화투치다 동료들 폭행한 부분은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김씨는 재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어울라"는 생활이 착안되기를 뒤집어 씌우며 무죄가 날 것인데 대비해 동료폭행사실을 찾아내 임은 사건인데...라며 재판관과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김씨는 그 후에 또 가끔 나리를 정복

이며 대한민법 사무실로 찾아와 "소송을 내시라고 한을 풀이달라"고 몇 시간씩 메를 쓰다 돌아갔다고 한다. 대한민법 직원들은 이때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봤자 뭘뿐이나 받게느냐"며 김씨를 달래 돌려보냈다. 김씨는 금년 봄에도 대한민법을 찾아왔다가 소독없이 돌아갔다. 김씨의 친구소지는 대전시 동구 대 2동 134의 11. 17동 통장 박춘식씨는 "김씨가 막노동판을 떠돌다 몇달만에 한 차레씩 들르기 때문에 만

할까 하는 생각도 했읍니다." 대한민법은 9월 13일 인권옹호위원회의 의견을 기치 "김지훈사건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은 蔡勳天(민호사)이고 조사위원에는 趙昇衡(善昌善) 민호사가 선임됐다. 진상조사단은 9월 25일부터 3일 동안 全州(大田) 清州 등지에 김지훈씨를 대동, 각종 기록을 복사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성실하게 현장조사도 했다. 이때 작성한 진상보고서는 현재 대한민법사무국에 보관돼 있다.

불구속기소된 고문형사들

치안본부는 9월 22일 김씨를 고문, 살인범으로 몰아붙인 전주경찰서 형사계 형법권경위(53) 朴永輪(49) 林永煥(43) 蘇淳奎(경사) 崔一先(경장) (38) 등 5명을 파면하고 형사임진했다. 또 감독책임을 물어 전주경찰서 수사과장 鄭正源(경정) (42) 과 吳炳泳(위) (41) 의 사표를 받고 면직조치했다. 형사임진된 형사들은 김씨의 합의서를 받아내 형사 처벌을 가리게 하기 위해 수백만원이 든 돈보따리를 싸들고 김씨를 찾아다니던 끝에 전주지법에

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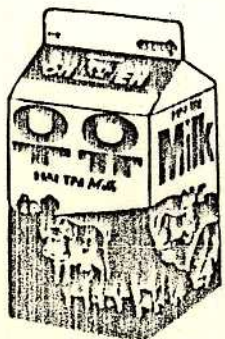
"그 사람 집나이로 36살인데 아직 장가도 못들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예요."

수사기관의 고문과 법원의 오판까지 김친이 사건은 한 인간을 삶의 터전인 노동관에서 끌어내 쫓아내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겪은 고통과 맺은 이 시대의 인권상황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우리들이 가는 길 위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

鮮度第一

진강우유로 마시는 우유는 첫째 신선해야 합니다. 해태우유는 신선도 제일주의로 언제나 신선한 우유를 목장에서 가져오 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해태우유는 좋습니다



해태우유



拷問은 영원히 追放되어야 한다

沈 在 宇

(高麗大法律大教授·法哲學)

拷問은 反人道的 범죄

拷問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1973년의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 엠네스티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고문의 사용은 인간의 자유 및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人道에 反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고문은 이러한 이유로도 정녕화될 수 없다. 고문을 통한 威嚇의 폭력은 누증적 악순환을 초래한다. 고문은 전임법치법이 아니라 저나라로 퍼져 나간다. 고문은 고문당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문하는 사람을 야수화한다.

(3) 인류의 양심에 부합하는 진해를 표명하고 이러한 악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고문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존중 이행하고 또한 이를 개선할 것과 유엔 인간의 3059호를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및 직업상의 책무를 가진 제 인사 및 조직들이 전세계적인 고문폐지운동에 대하여 능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이 선언에서 고문의 가장 정화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고문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고문에 의하여 인간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며 비인간으로 전락된다.

고문은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도 파괴한다. 고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단순한 폭력과 구별되는 것은 그 도덕성에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국가권력은 강도집단의 폭력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강제단체이기만 하지만 강도단체는 아니다. 국가는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는 권력집단이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 孟子가 악을 행하는 폭군은 이미 군주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맹자는 「仁을 해치는 자를 賊이라 하고 義를 해치는 자를 殘이라고 한다. 殘賊을 일수는 자를 一夫라고 말한다. 一夫 殘을 살해했다는 말은 들리어도 君主를 시해했다는 말은 아직 들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이다. 악을 행하는 군주가 군주의 자기를 상실하고 하나의 필부로 전락되는 것과 같이 악을 행하는 국가도 국가의 자격을 상실하고 폭력집단으로 전락되기 마련이다.

인간: 국가의 대두리 밖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도덕성의 기초이다.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권리는 목적과 목적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의 조건에 놓여 있다. 인간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결코 자기 목적을 기질 수 없으며 오히려 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 拷問의 양상

고문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국가가 형벌권을 수중에 넣고 나서 범죄의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그 개념은 생겨났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 9조에 의하여 고문이 금지되기까지 고문이 라는 제도적 폭력은 국가권력의 이름 아래 범죄수사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대의 고문은 대부분 아직도 개별적인 파립치범죄의 죄상을 밝히 내기 위

고문은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도 파괴한다. 고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되기 때문이다.

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確信犯이라는 새로운 정치범이 생겨나자 고문에 의한 인간 학대는 그 절정에 이르러 된다. 여기서의 고문은 그 진의 고문과 진히 본질을 달리 한다. 그 진의 고문은 범죄인으로로부터 자배을 얻어내기 위하여 법적 소용질차에서 문제되었지만, 그 후의 고문은 통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진자를 법적 고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치적 고문이라 할 것이다.

정치적 고문은 정치적 반대자를 모조리 그 대상으로 한다. 이제 고문의 대상자는 한 두 사람의 살인범이나 강도범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 전부이다. 그것은 양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 전부일 수 있고 한 민족이나 한 인류 전부일 수도 있다. 고문은 이제 집단 학대와 집단 학살의 도구로서 옷을 바꾸어 입은 것이다.

이테올로기라는 괴물이 20세기의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고문은 정치적 도구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19년 이후의 소련에서부터 시작하여 헝가리 스페인 약제리 그리고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 나찌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한국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베트남 캄부지야,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등 인간 학대와 인간 교살의 역사는 온 세계로 번져 나갔다.

이테올로기의 대립이 있는 곳에는 어디시나 반드시 고문이 뒤따랐다. 그동안 이테올로기의 제물로 희생된 인간의 무리가 얼마인지는 헤아릴 수 없다. 「스탈린」, 「히틀러」, 「프랑코」와 「분노」이 죽인 사람만 합해도 1천만이 훨씬 넘으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까지 합하면 아마도

「모든 인간은 그의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서로 밖에 정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또 나찌시대에 국가권력에 의한 비인간적 만행을 체험한 다음 나온 시독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명한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은 법개념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근본 규범이 된 것이다.

拷問의 현재 상황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고문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되는지 「장 아메리」의 입을 통하여 알아보자.

「아메리」는 나찌의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베르겐 벨젠 등의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체험을 후일 괴와 속죄의 지점에서 「라는 제목을 붙여 책으로 펴냈다. 그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지 이면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확실한 것은 첫째를 맞을 때 이미 무엇인가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세계 신뢰」의 상실이라고 말할

ضح히 빛 친만은 되리라.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20세기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마의 세기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기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학살하여 버린다.

20세기는 물질문명에 있어서 구도로 발전된 시대라 하지만 인간과 인간성에 있어서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잔인한 인간성 파괴행위를 통하여 정신문화는 결음을 밟추었으며 도덕성은 야만성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기무한 시대가 20세기이다. 국가폭력은 친구를 공포의 분위기로 뒤덮었으며, 인류는 자유를 통한 인간의 도덕화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2백년 전에 「칸트」가 한 말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우리는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고도로 문화화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교적 예법에 있어서 귀찮을 정도로 문명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도덕화되어 있다 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왜냐하면 도덕성의 이념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는 도덕성의 이념이 발전음을 멈춘 시대이다. 그러나 야수로 변한 국가집단에 대하여 인류는 드디어 의지 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승인하라!」 「인권을 존중하라!」고. 그 외침은 드디어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수록되었다.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 신뢰의 요소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성문적 또는 불문적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나의 육체적 정신적 존재를 존중한다는 데 있다. 나의 육체의 경계는 나 자신의 경계이다. 첫 번째에서 이 세계 신뢰는 무너지고 만다. 육체의 경계는 사라지고 타인의 육체가 나를 덮친다. 그 타인은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나를 점멸시키 버린다. 그것은 마치 양해 없이 상대방의 육체를 유린하는 강간과 같은 것이다. 정당방위의 가능성이 조금만 있더라도 나는 그 원칙을 동원하여 타인에 의한 강제침범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게 하여 나의 육체의 존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사회계약은 다른 원칙에 입각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타인이 나의 이를 잡아 뽑고 나의 눈을 부풀이 오르게 하여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원칙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또한 첫 번째와 더불어 고문 당하는 자가 명백히 의식하는 것은 그는 어느 누구로부 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끝내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죽고 만다는 것을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형제나 친구나 부인 등은 이곳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다. 「아메리」의 체험에 의하면 고문은 현재 상황에서 벌어진 다. 현재 상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 상실과 세계 상실을 함께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고문당하는 자의 위치이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욕을 보이면